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2001. 12.

정재호

序 言

GATT/WTO는 그동안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전 세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각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 간의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는 GATT/WTO에 의한 세계주의 소수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에 의한 지역주의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소수 국가간에 체결되는 무역특혜협정은 1957년 EC를 시작으로 현재 150여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된 상태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후하여 1990년대에 무려 100여개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WTO 회원국들이 하나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WTO 출범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소외되어 우리나라만 그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WTO 회원국이고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의 무역특혜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에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정책에 내용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첫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알맞은 비회원국에 대한 對外 관세정책과, 둘째, 자유무역협

정 체결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 협정 상대국에 대한 對內 관세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해 득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산업간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역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책당국이 협정 상대국에 대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반적인 대외 관세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진수 박사와 이명헌 박사,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 드리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주희 연구원과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안상숙 연구조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출판과 직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2월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GATT는 1930년대 세계적인 불황 이후 나타난 고관세, 수출입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더욱 황폐화된 세계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1948년 창립되었다. GATT는 설립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포함한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시키는 등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GATT를 이어 받은 WTO도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일명 New Round)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GATT/WTO에 의해 주도되는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GATT/WTO에 의해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각 국가들은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혹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해관계가 통하는 국가간의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무역특혜협정은 EC(European Communities)가 1957년 처음으로 GATT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여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후한 1990년대 무려 100개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자유무역협정은 93개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로 거의 모든 WTO 회원국들이 하나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은 GATT/WTO에 의해 주도되는 다자주의 혹은 세계주의(multilateralism 혹은 globalism)와 소수국가의 무역특혜협정에 의한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

(bilateralism 혹은 regionalism)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WTO 회원국이고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의 무역특혜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밖에 뉴질랜드, 태국, 멕시코,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해 득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 맞는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 협정 대상국에 대한 대내 관세 인하 일정 설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무역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우리나라도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본 협정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알맞은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external tariff)정책과, 둘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에 대한 대내 관세(internal tariff)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대외 관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는 대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 정책임을 언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생산자가 이윤을 더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 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관세를 인하하여도 생산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무임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 관세가 된다. 현실적으로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는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수출입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외관세를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온 관세율 균등화정책과 상치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연구주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세율 균등화 정책을 평가하고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회원국간에 모든 재화에 대해 무세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와 여건에 의해 특히 더 보호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일시에 무관세로 개방을 할 경우, 해당 분야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1].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품목에 관세유예 혜택을 줄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둘 것인가가 협상의 중요한 큰 의제로 등장하게 된다.

---

1) 본 보고서에서 관세유예기간을 논의할 때의 관세는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대내 관세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최적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모든 국가들과의 교역에 적용되는 대외 관세를 의미하므로 협정 상대국에만 적용되는 관세와는 다르다.

여러 자유무역협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여건이 바뀌고 이로 인해 산업간 구조조정과 자원 재배치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조건 관세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득은 아니다. 기간이 길수록 산업의 구조조정은 그만큼 늦어지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지연시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된다. 구체적인 관세 인하 일정은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대외관세, 산업간 교역 규모, 여타 다른 국가와의 교역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협정 자체가 주는 여타 이득, 협정상대국의 관세 인하 일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유예기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 인하 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일정기간 이후에 관세 인하 실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운영, 협정 상대국별로 수입 할당량 한정, 계절관세 혹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관세 적용 등 관세 인하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만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관세 인하 폭을 제시하여 협상의 신축성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 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면서 다만 그 부정적인 효과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일정을 제시하거나 관세 인하 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본 목적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

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관세와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우리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 조정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품목(HS 6단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칠레 혹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 관세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수산물이 이의 대상이 될 것이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대외 관세와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는 농수산물(HS 01~24) 중 수입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 중에서 HS 6단위 기준으로 35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와 체결될 경우에는 38개 품목이었다.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대외 관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는 칠레와 체결될 경우에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냉동한 어류의 내장(HS 030380), 기타 냉동어육(HS 030490), 기타 사료용 조제품(HS 230990), 사료용 식물(HS 121490) 등의 순서로 가능성이 컸다. 뉴질랜드와 체결될 경우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뼈째 절단한 냉동 쇠고기(HS 020220),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90), 냉동한 소의 기타 식용설육(HS 020629), 뱀장어(HS 030192) 등이 있었다. 대외 관세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협정 상대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품목으로는 칠레와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포도(HS 080610), 포도주와 포도

즙(HS 220421, HS 220429) 등 16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이 미미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기에 칠레보다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뉴질랜드와 체결될 경우에는 밀크와 크림(HS 040221, HS 040210, HS 040130), 치즈(HS 040690), 버터(HS 040510) 등 낙농제품, 냉동 양고기(HS 020442), 냉동 쇠고기(HS 020230), 키위(HS 081050) 등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동 쇠고기를 제외하고 여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들 제품에 대해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탄력성에 따라 관세 인하 일정도 결정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품(HS 25 이상)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칠레와 뉴질랜드와는 달리 공산품의 교역이 양국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입 상위 200개와 일본 수출 상위 200개 품목 중 서로 중첩되는 품목이 88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모두 23개였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대외 관세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은 몇 개 없었다. 기타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회로(HS 854219), 석유 및 역청유(HS 271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HS 740311), 기타 철의 웨이스트(HS 720449), 기타 통신용기기(HS 851750) 등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88개 품목 중 ITA 등으로 이미 무관세가 혹은 무관세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최대 47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일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 품목에 있어서 대부분

이 중간재이고, 또한 일본의 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의 설정은 앞서 언급한 칠레와 뉴질랜드의 농수산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공산품의 경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간재에 치중해 있고 가격에 상관없이 품질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무세화를 통해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목 차

Ⅰ. 서론 ····· 19

Ⅱ. 무역특혜협정의 의의 ····· 24
1. 경제통합과 무역특혜협정 ····· 24
가. 부문별 통합 ····· 24
나. 자유무역지역 ····· 24
다. 관세동맹 ····· 25
라. 공동시장 ····· 26
마. 경제동맹 ····· 26
바. 완전한 경제통합 ····· 27
사. 그 밖의 경제통합 방법 ····· 27
2. 무역특혜협정 현황 및 효과 ····· 28
가. 세계적인 현황 ····· 28
나.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추세 ····· 31
다. 무역특혜협정 확대 이유 ····· 34
라. 주요 무역특혜협정 ····· 36
마. 무역특혜협정의 효과 ····· 45
3.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 51
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1
나.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 51

Ⅲ. 최적 대외관세 ····· 56
1. 최적 관세의 개념 ····· 57
2.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 대외관세 ····· 60

가. 자유무역협정 가입 후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 변화 63
나. 가정[1]인 상태에서의 최적 관세 ····· 67
다. 가정[2]인 상태에서의 최적 관세 ····· 70
3. 주요국의 대외관세 정책 ····· 72
가. 미국 ····· 73
나. 멕시코 ····· 75
다. 캐나다 ····· 77
라. 호주 ····· 78
마. 뉴질랜드 ····· 80
바. 칠레 ····· 81

Ⅳ. 관세유예기간 ····· 83
1. 개념 ····· 83
2. 주요 협정의 관세유예기간 ····· 85
가. NAFTA ····· 85
나. 칠레와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 ····· 90
다. 칠레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 94
라. 칠레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 99
마.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 104
3. 관세유예기간 설정 ····· 107

Ⅴ. 우리나라의 정책방안 ····· 113
1.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는 국가들 ····· 113
가. 칠레 ····· 113
나. 뉴질랜드 ····· 132
다. 일본 ····· 144
2. 최적 관세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65

3. 관세 인하 일정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2

VI. 요약 및 결론 ····· 179

참고문헌 ····· 187

표 목 차

<표 Ⅱ- 1> 무역특혜협정의 GATT/WTO 통보 현황 ····· 29
<표 Ⅱ- 2> WTO/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현황 ····· 29
<표 Ⅱ- 3> WTO/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현황
(1990년 이후) ····· 30
<표 Ⅱ- 4>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현황 ····· 32
<표 Ⅱ- 5>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현황
(1990년 이후) ····· 33
<표 Ⅲ- 1>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국내시장가격 변화 ···· 67
<표 Ⅲ- 2>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세화 비중 ····· 82
<표 Ⅳ- 1>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 계획 ····· 85
<표 Ⅳ- 2> 미국·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인하 일정 ····· 86
<표 Ⅳ- 3> 캐나다의 對미국 교역규모 ····· 87
<표 Ⅳ- 4> NAFTA 관세유예기간 ····· 88
<표 Ⅳ- 5> 멕시코를 중심으로 본 NAFTA의
관세 인하 계획 ····· 89
<표 Ⅳ- 6> NAFTA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일정 ····· 90
<표 Ⅳ- 7>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상황 ····· 91
<표 Ⅳ- 8> 칠레-멕시코 간 관세 인하 일정 ····· 92
<표 Ⅳ- 9> 칠레의 對멕시코 교역규모 ····· 92
<표 Ⅳ-10> 칠레, 멕시코 원산지 사과 관세 인하 일정 ····· 93
<표 Ⅳ-11> 칠레의 對캐나다 교역규모 ····· 94
<표 Ⅳ-12> 칠레의 對캐나다 관세 인하 일정 ····· 96
<표 Ⅳ-13> B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 98
<표 Ⅳ-14> Bn1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 98

<표 Ⅳ-15>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 ····· 99
<표 Ⅳ-16> 부속서 1에 규정된 일반관세 인하 일정 ····· 100
<표 Ⅳ-17> 부속서 2에 규정된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 101
<표 Ⅳ-18> 부속서 3에 규정된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 101
<표 Ⅳ-19> 부속서 6에 규정된 특별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 102
<표 Ⅳ-20> 부속서 8에 규정된 특별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 103
<표 Ⅳ-21> 칠레와 MERCOSUR의 관세유예 품목 ····· 103
<표 Ⅳ-22> 관세유예 품목이 차지하는 교역비중 ····· 104
<표 Ⅳ-23> 뉴질랜드의 對호주 교역 규모 ····· 105
<표 Ⅳ-24> 감자가루의 관세 인하 일정 ····· 106
<표 Ⅳ-25> 포도주의 관세 인하 일정 ····· 107
<표 Ⅴ- 1> 우리나라의 對칠레 교역현황 ····· 115
<표 Ⅴ- 2>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 116
<표 Ⅴ- 3>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입 ····· 117
<표 Ⅴ- 4> 칠레의 GDP 산업별 구성 ····· 118
<표 Ⅴ- 5>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 ····· 120
<표 Ⅴ- 6> 칠레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농수산물 규모 ···· 123
<표 Ⅴ- 7>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칠레) ····· 128
<표 Ⅴ- 8> 우리나라의 1인당 과실류 연간 소비량 ····· 131
<표 Ⅴ- 9> 우리나라의 과실류 생산량 ····· 131
<표 Ⅴ-10>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교역현황 ····· 133
<표 Ⅴ-11>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 ····· 134
<표 Ⅴ-12>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입 ····· 134
<표 Ⅴ-13>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 ····· 136

<표 Ⅴ-14> 뉴질랜드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농수산물
규모 ····· 139
<표 Ⅴ-15>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뉴질랜드) ····· 142
<표 Ⅴ-16> 우리나라의 對일본 교역현황 ····· 145
<표 Ⅴ-17>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 ····· 147
<표 Ⅴ-18>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입 ····· 147
<표 Ⅴ-19>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공산품 ····· 149
<표 Ⅴ-20> 일본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공산품 규모 ····· 155
<표 Ⅴ-21>기존 무세화 품목들 ····· 160
<표 Ⅴ-22>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일본) ····· 163

그림목차

[그림 Ⅱ-1] GATT/WTO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추세 ····· 30
[그림 Ⅱ-2]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 현황 ····· 33
[그림 Ⅱ-3]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 현황
(1990년 이후) ····· 33
[그림 Ⅱ-4]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47
[그림 Ⅲ-1] 소국의 수입수요곡선 ····· 61
[그림 Ⅲ-2] 관세율 변화 ····· 62
[그림 Ⅲ-3] 자유무역협정 내 수요 및 총공급곡선 ····· 64
[그림 Ⅳ-1] 국내시장의 수입수요 ····· 111

Ⅰ. 서 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948년 1월 1일, GATT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930년대 불황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관세, 수출입 제한, 외환관리 등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침으로써 세계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GATT는 설립 이후 세계무역 자유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지난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그 기능이 이전되었다.

GATT/WTO에 의해 추진되어온 다자간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포함하여 8차례 이루어졌으며, 현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제9차 뉴라운드(New Round)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GATT/WTO에 의해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각 국가들은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혹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간의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자유화는 GATT/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몇몇 소수국가의 무역특혜협정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하였다.

소수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특혜협정 중에서 가장 먼저 GATT에 통보된 것은 EC(European Communities)로서 1957년 GATT에 통보되었고 1958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 이후 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은 1970년까지 총 5개에 그쳤으나 1970년대

19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에 통보되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9개의 무역특혜협정이 통보되면서 그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졌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후하여 1990년대에는 무려 100개[1]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됨으로써 현재까지 약 150여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된 상태이다. 즉, 이젠 거의 모든 WTO 회원국들이 하나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WTO 회원국이면서 무역특혜협정을 하나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2001년 말에 회원국이 된 중국[2]이 있다. 즉, 이 나라들은 교역규모가 세계에서 상위에 속해 있으면서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GATT 규정 제24조는 무역특혜협정을 크게 구분하여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공동의 관세(common tariffs)를 부과한다. 즉, 관세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도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관세동맹과 다른 점은 비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

---

1) 1990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종료 직전인 1994년까지 33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에 통보되었으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종료 이후 더욱 증가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70개의 무역특혜협정이 통보되었다.

2)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의 크기를 각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은 비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다른 관세를 비회원국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GATT 협정 제24조에 의해 GATT/WTO에 통보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추세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 비슷한 추세로 GATT에 통보되었으나 1990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만 자유무역협정 80개, 관세동맹 6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2001년 3월 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이 108개, 관세동맹이 13개로 자유무역협정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밖에 뉴질랜드, 태국, 멕시코, 그리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해 득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경제적 상황에 들어맞는 비회원국에 대한 對外 관세(external tariff) 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 협정 대상국에 대한 對內 관세(internal tariff) 인하 일정 설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에서 회원국들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무역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큰 득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우리나라도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전반적인 관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

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알맞은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 정책과, 둘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에 대한 대내 관세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 자유무역협정에서 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 등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현재 GATT/WTO 체제하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무역특혜협정의 현황과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동시에 그동안 이루어진 대표적인 무역특혜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무역특혜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기타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외관세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의 논문에서 논의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 대외관세에 대해 정리한 후 여타 다른 가정들을 적용하여 최적 대외관세를 분석하고 주요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의 대외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대내 관세유예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유예기간의 개념을 정립한 후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채택된 여러 유형의 관세유예기간 사례들을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 인하 일정 설정에 대해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관세유예기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고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관세 조정의 필요성이 큰 품목과 관세 인하 일정의 설정 가능성이 큰 품목들을 HS 6단위로 선정하여 이에 대

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 본 보고서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무역특혜협정의 의의

1. 경제통합과 무역특혜협정

각 국의 경제통합은 회원국 내부의 결속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몇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동태적 과정중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통합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부문별 통합

부문별 통합(sectoral integration)은 특정 경제부문 혹은 특정산업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통합하는 형태이며, 통합의 폭이 가장 협소한 제한적 성격의 경제통합이다. 1952년에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나.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통합에 참가한 각 회원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

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회원국들은 관세가 가장 낮은 회원국에 상품을 수출한 이후 이 상품들을 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로 재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각 회원국의 관세정책 실시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국가별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예로는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연합(CERT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있다.

다. 관세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를 철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회원국에 대해 공통의 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즉,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 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하나, 관세동맹에서는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회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산지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외적인 협상에서 보다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EU)을 들 수 있다.

라. 공동시장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역내 회원국간에 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즉, 회원국 상호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시장은 회원국이 갖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동질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 및 통화동맹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시장의 예로는 EEC를 비롯하여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3],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4], 카리브 공동시장(Cari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5] 등이 있다.

마. 경제동맹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회원국간의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외에도 각 회원국간 재정, 금융 및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통해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형태를 지칭한다. 현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공동시장의

---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4)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 바하마, 가나, 자메이카, 하이티, 도미니카 등

완성과 더불어 통화동맹의 결성을 이룸으로써 경제동맹의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다. 1960년 1월의 베네룩스경제동맹도 경제동맹에 해당한다.

바. 완전한 경제통합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회원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금융, 재정, 통화정책 등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합유형이며, 각국은 사실상 하나의 단일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통화정책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유의 경제적 주권이 초국가적인 기구로 이양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완전한 경제통합은 각국의 국가주권이 포기되고 하나의 단일국가로 통합이 될 때 실현가능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제통합의 개념을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무역상의 특혜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도 포함할 경우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기타 장기무역협정에 의해 무역상의 선별적 특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국제간 협력도 경제통합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경제통합 방법

이상과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은 다시 역내시장 확대에만 목적을 두느냐, 對역외공동정책의 수행까지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소

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혜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은 각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 제거에만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소극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이라 한다. 반면 이러한 역내무역 자유화에 더하여 역외공동관세, 공동통상정책 등과 같은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이라 한다.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과 같은 경제통합은 적극적 통합의 범주에 들게 된다.

경제통합의 단계와 형태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통합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형태가 특정 형태에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떠한 경제통합이든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원국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하여 비회원국에 대해 차별을 가한다는 것이다.

2. 무역특혜협정 현황 및 효과

가. 세계적인 현황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무역특혜협정 현황 및 추세를 WTO 자료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3월 현재 152개의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이 밖에 아직 통보되지 않은 지역의 무역협정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 무역특혜협정의 GATT/WTO 통보 현황

(단위 : 개수)

	새로운 회원국 가입	새로운 무역특혜협정 체결	합 계
GATT 협정 제24조(FTA)	4	104	108
GATT 협정 제24조(CU)	4	9	13
Enabling Clause	0	19	19
GATS 협정 제5조	1	11	12
합 계	9	143	152

자료 : WTO

<표 II-2> WTO/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현황

(단위 : 개수)

1948~1959	1960~1964	1965~1969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1.3
2	2	1	11	8	5	4	33	70	16

주 : 2001. 3월까지 자료임.

자료 : WTO

무역특혜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1994년의 5년 간 33개의 협정이, 1995~1999년 사이 7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0] GATT/WTO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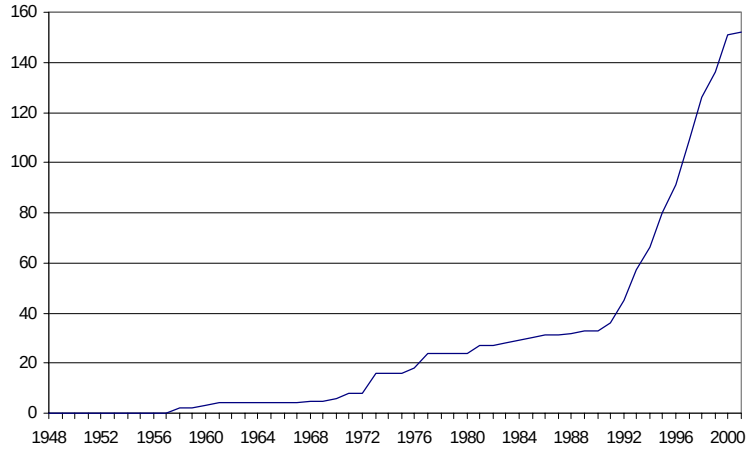

<표 II-3> WTO/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 현황(1990년 이후)

(단위 : 개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
0	3	9	12	9	14	11	18	17	10	15	1

주 : 2001. 3월까지 자료임.
자료 : WTO

1990년대 무역특혜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마지막으로 체결될 시기부터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WTO가 출범된 지 약 6년이 지난 2001년 3월 현재 86개의 무역특혜협정이 체결되어 WTO에 통보되었는데 이러한 숫자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6년 간 유지되어온 GATT 체제 아래서 GATT에 통보된 무역특혜협정이 66개

인 것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특혜협정의 체결이 다자체제의 보완으로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무역특혜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도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추세

GATT 협정 제24조는 회원국들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GATT 협정 제24조는 GATT를 이끄는 기본원칙 중 하나인 MFN(Most Favored Nation)원칙[6]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에서는 새로운 무역특혜협정 가입으로 非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가입 전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GATT는 무역특혜협정에 관해 크게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을 용인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공동의 관세(common tariffs)를 부과한다. 즉, 관세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도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한다. 그

---

6) GATT 제 1조에 언급된 MFN원칙은 어느 한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혹은 부여할 특혜를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GATT의 무차별원칙(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은 Bagwell and Staiger(1999)가 규정하였듯이 상호주의원칙(the principle of reciprocity)과 함께 GATT를 이끄는 두 축이다.

러나 자유무역협정이 관세동맹과 다른 점은 비회원국에 부과되는 관세의 크기를 각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은 비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다른 관세를 비회원국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GATT 협정 제24조에 의해 GATT/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추세는 다음의 <표 Ⅱ-4>, <표 Ⅱ-5>와 [그림 Ⅱ-2], [그림 Ⅱ-3]에 잘 나타나있다.

2001년 3월 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이 108개, 관세동맹이 13개로 자유무역협정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특혜협정에서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의 압도적인 우위가 두드러지게 된 시기는 1990년 이후이며, 1990년 이전에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비슷한 추세로 GATT에 통보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체결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로운 관세동맹의 결성보다는 단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과 1998년에 최고조에 이르러 한 해에 16~17개에 이르는 자유무역협정이 WTO에 신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1948~1990년 간 약 50년이 넘는 기간 중 GATT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이 14개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현황

(단위 : 개수)

	1948 ~ 1959	1960 ~ 1964	1965 ~ 1969	1970 ~ 1974	1975 ~ 1979	1980 ~ 1984	1985 ~ 1989	1990 ~ 1994	1995 ~ 1999	2000 ~ 2001[1)]
FTA	0	1	0	5	6	1	1	22	58	13
CU	1	1	0	4	0	1	1	3	3	0

주 : 2001. 3월까지 자료임.
자료 : WTO

[그림 II-1]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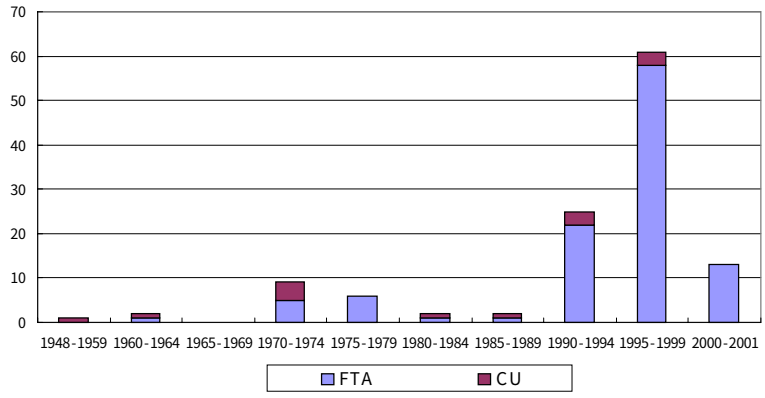

<표 II-5>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현황(1990년 이후)

(단위 : 갯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
FTA	0	0	7	11	4	7	10	16	17	8	12	1
CU	0	2	0	1	0	1	1	1	0	0	0	0

주 : 2001. 3월까지 자료임.
자료 : WTO

[그림 II-2]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통보 현황(199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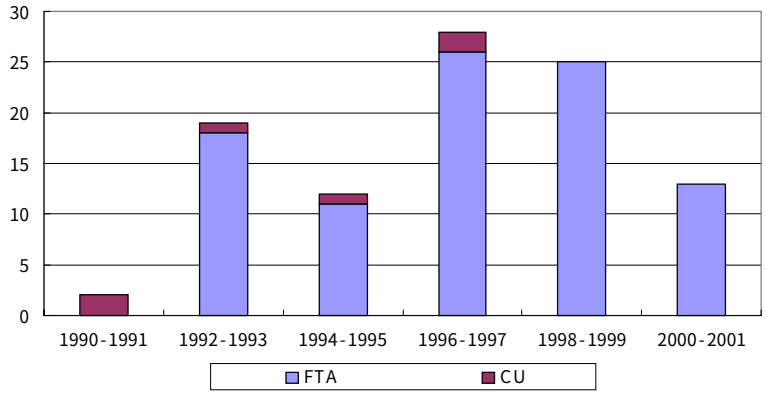

다. 무역특혜협정 확대 이유

무역특혜협정은 지난 1990년 이후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확대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고 이러한 무역특혜협정이 과연 전세계 무역 자유화에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무역특혜협정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우선 다자간 체제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일종의 다자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7]. GATT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무역자유화가 많은 국가간의 이익의 대립으로 만약 실패할 경우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게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대국간의 싸움에서 피해 보는 것을 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자간 체제의 실패를 우려한 보험적인 성격으로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WTO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

7) Serra, et al.(1997) 참고.

또 다른 주장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체제를 적극 지지하던 미국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Bhagwati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는 미국이 다자간 체제를 주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NAFTA의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 어려운 각국의 시장개방을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은 그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Baldwin(1999)은 유럽에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자전거 효과(Bicycle effect) 혹은 도미노효과를 주창하였다. 이는 처음에 한 번 힘껏 페달을 밟으면 그 뒤로는 손쉽게 자전거가 나아가듯이 처음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 후 여러 국가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처음에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는 것을 하지 못해 자전거 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한 번 자전거가 가속을 받으면 순조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무역특혜협정이 각국의 시장개방으로 연결되어 전세계 무역 자유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 Krugman (1991), Bhagwati(1993), Levy(1997) 등은 무역특혜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 원산지규정, 특혜협정으로 인한 역내 수출업자 보호에 따른 다자주의 반대 등으로 무역특혜협정과 같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로 확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그동안 추진되어온 무역특혜협정이 GATT/WTO 규정

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예로 모든 지역무역협정은 GATT/WTO에 보고하여 이 곳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을 논의하는 GATT/WTO 위원회에 의하면 어느 지역무역협정도 만장일치로 승인이 허락된 적도 없지만 한편 부결된 적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 주요 무역특혜협정

1)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가 오늘날 경제통합의 대명사로 지칭될 만큼 지역적 경제공동체로서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진 역사적·사상적 전통과 전후 유럽이 처한 정치적 여건 등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로마조약(1957년 3월 25일 서명)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 의회에서 비준을 얻음으로서 1958년 1월 1일자로 발족되었다. 로마조약에 나타난 EEC 성립의 주요목적은 가맹국간의 균형발전, 생활수준향상 및 상호간 밀접한 유대관계의 수립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상호간 경제정책을 접근시켜 점차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진 EEC 창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6개국의 관세동맹에 대항해, 비 EEC국가들을 설득하여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자유무역지역(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8]을 1960년 설립하였다. EC(European Community 또는 European Communities)가 1967년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를, 1981년에 그리스를,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입시켜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유럽연합조약(TEU: Treaty

8) 당시 참가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7개국이다.

on European Union)이 12개국의 비준을 얻어 1993년 11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출범하게 되었다.

1995년 EFTA 3개국(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이 EU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1997년 EU 확대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EU 15개국 중 11국이 참여하여 단일통화(유로)도입,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및 공동금융통화정책 시행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유로권 11개국은 인구 2억 9천만명(미국 2억 6천만), 전세계 GDP의 19.4%(미국 19.6%), 전세계 교역량의 18.6%(역내교역제외, 미국 16.6%)를 차지하는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2001년 1월 그리스도 EMU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새로운 유로화가 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부상,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화 등으로 다극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GATT에 의해 주도되어온 다자간 무역협상 이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근 국가들간에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세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미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이해 관계가 큰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멕시코에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공통적으로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천연자원과 저임금 노동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북미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EU의 확대에 대비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유

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와 각국 나름대로의 이해관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의 결합은 미국경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둘째, 매년 큰 무역수지 적자로 미국의 대외경제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주로 대미 흑자국에 대한 쌍무적 협정 추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셋째,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일본과 EU에 대처할 만한 큰 협상력이 필요하였다. 넷째, 다자간 체제를 통한 이익 추구와 함께 다자간 체제의 한계도 함께 인식하여 쌍무적 협정 방식에 의해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증대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미국과 위아래로 인접한 국가들은 미국과 가장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 안보적으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인접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여 안정을 이루는 것도 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멕시코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멕시코의 외채가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되어 급격한 정치변혁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어 멕시코로 인해 미국으로까지 파생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곧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의미한다고 여겨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나, EU와 일본 등의 자국 시장 진입, 계속되는 경제부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국이며 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은 미국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 등으로 자유무역협상은 진전을 보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6년 5월 자유무역협상을 개시하여 1989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는 1999년을 기해 거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총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멕시코가 1985년부터 시작한 경제개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미국 및 외국의 자본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미국도 멕시코와 1985년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서 1987년 11월 양국간 무역자유화에 관한 공통적 목표 정립과 행정기구 설치 등 자유무역협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인 1990년 9월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캐나다에게 큰 고민거리를 부여하였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그대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3자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가 고민거리였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멕시코와 같이 나누면서 손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멕시코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캐나다도 멕시코에 진출을 할 것인지를 저울질하였다. 캐나다는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멕시코 소비시장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미국과 멕시코 자유무역협상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희망하였다. 이는 교차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3국이 참여하는 보다 큰 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1년 2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 정상들이 NA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걸쳐 1994년 1월 1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북미 3국이 하나의 통합체를 형성하여 캐나다의 천연자원, 미국의 기술 및 자본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결합한, 인구 3.8억명, 총생산량 8조 달러의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함으로써 EU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이다. NAFTA가 발효

된 1994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인접하고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총수출의 80.5%, 총수입의 65.8%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총교역 규모는 233억달러로 약 74%를 차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멕시코의 경우 국토면적과 인구, 천연자원 및 공업화의 정도에서 막강한 경제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미국에게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세 번째 수출상대국이고 세 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특히 미국 석유 총수입의 약 11%가 멕시코에서 공급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멕시코의 수출과 수입의 2/3 이상을 점하는 멕시코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교역은 미미하여 멕시코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1%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멕시코도 NAFTA가 발효된 1994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2.4%,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입비중은 약 20% 내외로 매우 높으나 멕시코와의 교역비중은 약 6~7%로서 캐나다에 비해 상당히 낮다.

결과적으로 NAFTA가 발효된 1994년을 기준으로 북미 3국의 역내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약 3,000억달러로 총수출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3국의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3,110억달러로 총수입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1960년 스톡홀름조약(Stockholm Convention)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영국을 위시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등의 7개국으로 구성된 공산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의미한다.

스톡홀름조약의 주요 목적은 가맹제국간 공산품에 대한 제반 무역제한을 철폐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공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역외지역에 대한 공동관세는 설정되지 않았으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이국간 협정에 의해 무역을 규제할 뿐 전체적인 공동규율은 설정되지 않았다.

그 후 1972년 영국과 덴마크의 EEC가입이 결정되자 EFTA의 시장규모는 크게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축소를 회피하기 위해 잔여 EFTA 국가와 EC 간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목적은 공업제품에 대한 광역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영국, 에이레, 덴마크를 포함한 확대 EC 9개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포르투갈 등 EFTA 7개국이 모두 참여하여 도합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이 EU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EFTA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등 4개국만이 남아 있다.

4)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공동시장은 1985년 11월 이구아수 선언을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경제통합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 7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Buenos Aires 조약이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였다. 1991년 3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참여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은 아순시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95년 남미공동시장을 창설하게 되었다. 남미공동시장

은 각각 칠레 및 볼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1995년부터 역내 조달비율이 60% 이상인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여 약 90%의 품목에 대해 회원국간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조정품목(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21, 파라과이 427, 우루과이 950개)에 대해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는 4년 이내,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대외 공동관세에 대해서는 공동시장 규칙상의 9천 품목 중 85%(7,650 품목)에 대해 1995년부터 0~20% 범위 내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위성통신설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여 자본재는 2001년까지 14%, 정보통신 관련 품목은 2006년까지 16%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조정하였다.

15%의 역외공동관세 예외품목은 2001년 또는 2006년까지 공동관세 채택을 연기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는 각각 300개 품목에 대하여 2001년까지 역외공동관세의 적용을 유예하고, 파라과이는 399개 품목에 대하여 200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완전한 공동시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인구는 약 2억천만명으로 NAFTA, EU, ASEAN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GDP 총액은 약 8,636억달러(1999년)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50대 기업 중 38개와 매출액기준 중남미의 500대 기업 중 345개가 MERCOSUR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역외기구 및 협의체와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ANCOM)와 함께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창설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1998년 4월에 자유무역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2년부터 완전자유무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주자유무역

지대(FTAA) 창설 추진, CER(호주·뉴질랜드)와 자유무역지대 창설, 1995년 12월 EU와 기본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도 추진중이다.

5) ASEAN 자유무역지대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8월 당시의 동남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과 마필린도(Malphilindo)의 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탄생한 동남아지역의 국제간 협력기구이다. 창설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1월 신생독립국인 브루나이가 가입하였고 1995년에 베트남이 가입하였다.

ASEAN의 설립목적은 초기에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탈피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안보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ASEAN은 약 3억명에 이르는 인구, 화교, 인도인, 말레이인, 타이인 등 다양한 인종, 그리고 지리적으로 대부분 도서해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역내주민 상호간의 문화 및 경제교류는 매우 제한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회교, 도교, 불교, 기독교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언어 역시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중국어, 영어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인구가 적은 싱가포르는 높은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아직 낮은 소득수준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인 격차도 크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인종상의 다양성과 함께 회원국간의 큰 소득차이로 인해 ASEAN은 자주, 독립, 반공이라는 정치적 유대의식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통합체를 구성하지는

못했으며, 이로 인해 창설 이후 10년이 지난 1976년까지 ASEAN은 국제간 협력기구로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정상회담을 통해 ASEAN은 역내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발리 정상회담에서는 ASEAN이 추구해 온 안전보장 및 평화의 유지는 무엇보다 경제발전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역내경제협력조치로서 「동남아 협력조약」과 「아세안 협력선업」(Declaration of ASEAN Concord)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ASEAN은 명실공히 경제협력기구 내지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87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일차산품 가격의 하락 등 국제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조치로서 역내 특혜무역협정(PTA) 대상품목의 확대, PTA 관련 관세인하폭 확대 및 합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의 확대를 결정하였다. 또한 역내교역을 저해하는 비과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역내투자촉진 및 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경제통합체로서의 기능을 보강해 왔다. 그리고 1991년 10월에는 ASEAN 자유무역지대에 합의하여 1994년부터 발효됨으로써 역내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ASEAN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 동기 중에는 WTO 발족을 전후하여 많은 지역무역협정들이 체결되어 ASEAN에게도 경제적인 협력과 함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확고한 지위가 필요하였고, APEC에서 논의되는 지역공동체에서 앞서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관세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ASEAN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염두하여 규정을 일률적으로 전 회원국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도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과 후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나누어 관세인하 적용시점과 관세인하율 등에 상호 차이를 두고 있다.

마. 무역특혜협정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이론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국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그 분석의 중심은 주로 관세동맹이론, 즉 관세동맹의 자원배분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두어져 왔다.

관세동맹이론(The theory of customs union)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통합이론은 1950년 Viner의 『관세동맹론』(The customs union issues)[9]의 출간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의한 관세동맹이론은 오늘날 경제통합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Viner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를 토대로 하여 관세동맹의 생산효과뿐만 아니라 소비효과 및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Viner 이전의 분석에서는 관세동맹은 회원국간에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게 되므로 점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로 여겨져서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

9)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tevens & Sons, London, 1950.

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관세동맹은 전세계 후생을 극대화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므로 전세계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관세동맹이 가진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의 특성 즉, 관세동맹 결성으로 인한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외국에 대한 무역차별화의 양 측면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전자인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함으로써 관세동맹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Viner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하여 무역창출(trade creation) 및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관세동맹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Viner는 관세동맹의 결성이 반드시 유리한 효과만을 유발하는 것이 불리한 효과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그림 Ⅱ-4]를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D와 S는 각각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특정 재화 X 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논의의 편의상 양국은 모두 세계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국이라고 가정하자.

OP_1은 X 재화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때 수출국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출 보조금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OP_t는 세계시장가격(혹은 수출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가격이며 OP_2는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수출가격을 의미한다고 하자. P_1, P_2는 각각 수출공급 곡선인데 이는 해당 국가가 세계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경제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II-3]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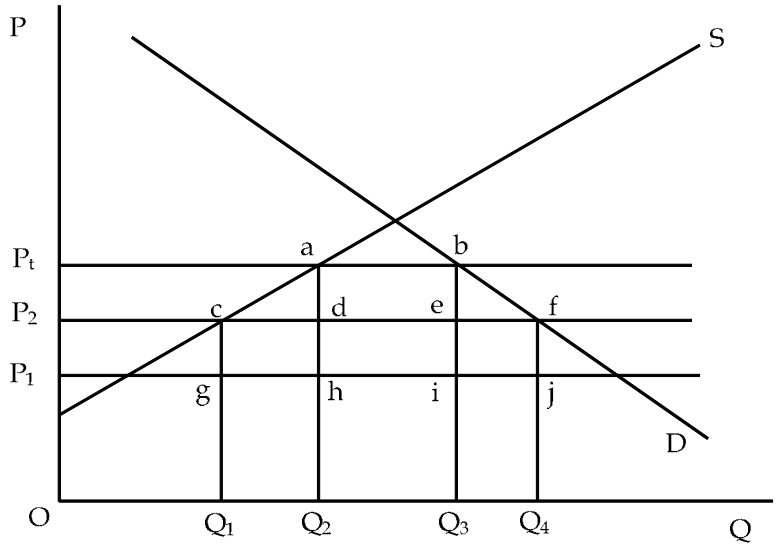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수요는 OQ_3이며 국내 생산은 OQ_2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초과수요로 인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Q_2Q_3만큼을 수입하게 된다.

무역특혜협정 체결 이후 상대 회원국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므로 자국은 OP_2의 가격에 상대 회원국으로부터 Q_1Q_4만큼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량은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한 이후 증가하게 되어 무역이 추가적으로 창출된다. 이는 국내시장가격이 OP_t에서 OP_2로 하락하여 국내 수요가 OQ_4로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은 OQ_1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무역특혜협정 체결 이후 국내시장가격의 변화는 자국의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초래한다. 소비자 잉여는 P_tbfP_2만

큼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 잉여는 P_tacP_2만큼 감소하게 된다. 한편 무역특혜협정 체결로 인하여 상대 회원국에 대한 관세철폐로 관세수입은 없어진다.

이러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관세수입의 변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후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합계는 (adc + bef - deih)가 된다. 여기서 무역특혜협정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는 두 삼각형의 합인 (adc + bef)라 할 수 있으며, 사각형 dehg는 무역전환효과를 나타낸다.

결국 무역전환으로부터 발생된 후생의 감소를 나타내는 사각형의 면적이, 무역창출로부터 발생된 후생의 증가를 나타내는 두 삼각형의 면적보다 작다면 무역특혜협정으로 회원국은 순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순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해야 하는데, ① 무역특혜협정 이전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② 상대 회원국과 기타 다른 역외국과의 생산비의 차이가 적을수록, 즉 P_1과 P_2의 거리가 짧을수록, ③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두 삼각형의 면적은 커지고 사각형의 면적은 작아져서 후생이 보다 증가하게 된다.

2) 동태적 효과

무역특혜협정이 유발할 수 있는 동태적 효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역특혜협정의 형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는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역특혜협정이 없을 때 회원국의 국내생산자들은 무역장벽의 보호 아래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자가 있더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유인이 없다. 그러나 무역특혜협정이 형성되고 회원국간에 무역장벽

이 완화되거나 혹은 제거될 경우 각 가맹국의 생산자들은 다른 생산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독점적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전문화 및 분업화를 통해 그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여 각 생산자들은 연구, 개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므로 결국 생산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무역특혜협정이 체결된 후에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담합이나 시장점유협정과 같은 과점적 수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역특혜협정의 형성으로 얻어지는 또 다른 이익은 시장확대의 결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특혜협정으로 비교우위산업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할 경우 생산량의 증대는 생산비용과 재화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연관 산업의 생산비용도 인하시키는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정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개도국에서는 그 효과가 크다.

셋째, 무역특혜협정은 투자를 촉진시킨다. 무역특혜협정이 형성되면 가맹국의 기업들은 확대된 시장을 이용하고 격화된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R&D 등에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관세동맹의 형성으로 비가맹국들은 그들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차별적인 무한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특혜협정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1995년 이후 미국기업의 유럽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이처럼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설명된다.

넷째, 무역특혜협정의 형성은 경제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무역특혜협정의 체결은 시장규모의 확대

와 더불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적재적소 배치로 인한 생산성의 증대 및 생산기술의 전파로 각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3) 그 밖의 효과

무역특혜협정의 체결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회원국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예로 NAFTA의 경우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멕시코 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조정 및 정치 민주화가 진일보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NAFTA를 이용하여 기존의 높은 관세로 정부의 보호 및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며, 협정에 의해 제시된 일정에 의해 차차 관세를 폐지해야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민주화의 진일보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미국도 인접국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이 곧 자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의미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1994년 멕시코에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NAFT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안정기금 200억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무역특혜협정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적 효과도 수반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경제 내에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무역특혜협정의 체결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되더라도 개인적

으로는 손실을 입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손실보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998년 11월 정부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다. 그 이전에도 NA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등으로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뒤로 미루어졌다. 1998년의 회의에서는 우선 칠레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칠레 양국 정상은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칠레에서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0년 12월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1년 3월에 칠레에서 열기로 예정되었던 제5차 협상은 양국간의 시장개방 문제로 연기된 상태이다.

칠레 이외에 우리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태국, 그리고 그 밖의 미국과 중국, EU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연구중에 있다.

나.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WTO 출범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우리만 소외되어 그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WTO 회원국으로 하나의 지역무역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10]뿐이었다. 이처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우리나라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고 생각된다. 한 때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등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한편 지역주의의 폐해도 지적하면서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WTO 다자간 체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11]. 따라서 현실적으로 WTO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엇보다도 양국간의 관세를 철폐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장도 개방하지만 반대로 상대국의 시장도 개방하기에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만큼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국제시장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받는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가 국내 경제에 큰 파급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안

10) 최근 일본도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임박해 있다.

11) 단순하게 관세분야에 있어서 한 예로 캐나다의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품목 중에서 관세가 없는 할당 내 수량은 자유무역체결국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할당 외 수입에 대해서는 300% 정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적인 국제시장의 확보는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러한 시장 개방화는 관세를 철폐 혹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만큼의 혜택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간의 개방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게 되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 및 우리나라 전체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개혁과 개방정책은 IMF 외환위기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한 몫을 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철폐만을 목적으로 체결되지는 않는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도 중요한 체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과 함께 멕시코 시장 자체의 매력에 의해 직접투자가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상대국인 미국시장 진출을 고려한 외국인 직접투자까지 합세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UNCTAD에 의하면 1988~1989년 사이 멕시코에 유입된 직접투자 액수는 연평균 24억달러에서 2000년 130억달러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994년 멕시코의 경제위기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적 이해가 얽혀있는 NAFTA 협정국의 도움과 함께 NAFTA라는 커다란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이라는 장점으로 남보다 쉽게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양국간의 시장개방 일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칠레는 자국의 관심품목(대부분 농산물)에 대해 계절관세, 관세할당, WTO 농산물 협상 후 논의 등으로 제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칠레측에 대해 우리의 관심품목(대부분 공산품) 거의 전부가 10년 균등철폐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예는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협상중인 칠레에서도 칠레가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추진하던중 농민들로부터 시장개방에 따른 협정체결 반대 시위가 거세게 있었으며, 이로써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칠레와 뉴질랜드의 협상에서는 칠레 낙농업의 반대로 협상의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혹은 다른 국내의 취약한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을 통해 이러한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인가가 항상 협정 체결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관세라는 장벽을 통해 보호받고 있던 산업들에게 이러한 장벽을 철폐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변화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어려운 산업은 도태되고 한편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상대국의 장벽제거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한 순간에 도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장기간의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비교역적, 다원적 기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원의 재배분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문제 이외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중국과 일본처럼 근접한 국가들이 공급측면에서 혹은 수요측면에서 대국이고 또한 서로간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배경 등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도 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 경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최적 대외관세

앞서 언급하였듯이 GATT 협정 제24조는 무역특혜협정에 대해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공동의 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도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 대내관세(internal tariff)를 부과하지 않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외관세(external tariff)를 부과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관세동맹과 다른 점은 비회원국에 부과되는 대외관세의 크기를 각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은 비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다른 대외관세를 비회원국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으로 인해 각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자국에 가장 유리한 새로운 최적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12]. 이와 같은 이유로 관세동맹에 반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각 회원국의 최적 대외관세를 살펴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12)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새롭게 부과되는 최적관세는 GATT 협정 제24조에 의해 가입 이전의 非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 최적 관세의 개념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왜곡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과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분균형분석방법은 관세가 특정 수입재의 생산량과 소비량 및 가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일반균형분석방법은 특정 수입재와 수출재와의 관계 아래서 관세가 특정 수입재의 생산량과 기타경제변수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각 분석방법 내에서도 관세부과가 교역조건(국제시장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즉, 관세부과가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small country)인 경우와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국(large country)인 경우의 각각에 대하여 관세의 경제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대국이어서 어떤 재화의 국제시장 상대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교역량은 감소되는 반면 교역조건은 개선(= 수입재의 국제시장 상대가격의 하락)된다. 교역량의 감소는 그 나라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교역조건의 개선은 그 나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최적관세란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후생수준의 증가가 교역량의 감소에 따른 후생수준의 악화를 최대한으로 능가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관세수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무관세(관세율이 0)로부터 시작하여 한 나라가 관세율을 점차 높여감에 따라 처음에는 자국의 후생수준도 개선되지만 어떤 수준 이상(최적관세율)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 자국의 후생수준은 오히려 악화된다. 이 때 한 나라의 후생수

준을 극대화시키는 관세를 최적관세라 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교역규모가 전세계의 교역규모에 비하여 왜소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관세정책이 국제무역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소국의 가정 위에서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서는 언제나 복지의 감소가 초래된다. 이는 소국경제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과 소비구조가 왜곡되어 교역량이 감소하며, 이러한 경제적 왜곡은 관세수입에 의해 항상 충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 국가의 복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정책을 통하여 국제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경제는 국제교역조건이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관세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자국경제의 복지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국을 가정하고 최적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상대방 국가가 자국의 최적관세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적관세정책을 취하는 국가는 소위 교역오퍼곡선(offer curve)에서 나타나는 상대방 국가의 무역반응형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자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보복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독점자와 같이 행동하며 시장의 독점자가 독점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공급량을 조절하듯이 관세정책을 통하여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할 것을 도모한다. 즉 상대방 국가의 교역오퍼곡선의 기울기에서 나타나는 한계교역조건이 최적관세부과국의 무역무차별곡선의 기울기에서 드러나는 재화소비의 한계대체율과 일치되도록 관세율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재화소비의 한계대체율을 국제교역조건, 즉 평균교역조건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통하여 평균교역조건과 한계교역조건을 괴리시키고 한

계교역조건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 \frac{1}{\varepsilon - 1}$$

이 수식에서 ε은 교역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국이 최고의 효용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은 결국 교역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1인 경우,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 또는 1보다 작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살펴보자.

첫째,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한다면 최적관세율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 경우 최적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국가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국이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교역상대국은 수입액을 조금도 감소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로 접근한다고 하면 최적관세율은 영(0)에 접근한다. 이는 국제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경제하에서 국제시장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소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교역조건은 불변이고, 단지 무역량의 감소로 인한 손실만을 초래하므로 관세의 부과는 최적정책이 되지 못한다. 즉, 이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가 오히려 부과국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최적무역정책은 자유무역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만약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최적관세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오히려 이 때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수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나라가 수입하는 외국상품에 최적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교역조건은 개선되지만,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무역량은 감소한다. 더욱이 한 나라의 최적관세부과에 대해 교역상대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국의 이익은 교역상대국의 손실보다 적다. 따라서 전세계의 후생은 자유무역하의 경우보다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무역은 세계후생을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 대외관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회원국의 대외관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Richardson(1993, 1995), Bagwell and Staiger(1993), 정재호(2000, 2001) 등이 있다.

Richardson(1993)은 소국(small country)과 대국(large country)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을 하였을 때 '대국은 기존의 관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 아래서 소국의 최적관세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의 결론은 소국이 관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후 대외관세를 낮추지만 대외관세를 철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Ⅲ-1]에서 ED는 소국의 수입수요를 나타낸다. 소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에 MFN 관세 t를 부과하고 ①+②만큼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대국의 국내시장가격이 더 낮은 관계로 전량 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이로써 추가적인 순잉여(net surplus)는 ①+③이나 관세수입은 전혀 없게 된다.

[그림 III-0] 소국의 수입수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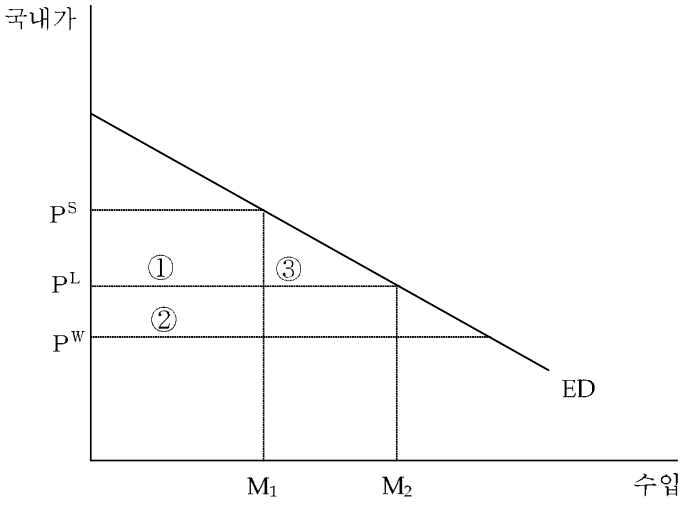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③-②가 양(+)인 경우 소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지만, 그 크기가 음(-)인 경우 무역전환효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서 만약 소국이 관세를 대국의 것보다 아주 조금 낮게 부과할 경우, 순잉여는 ①+③과 관세수입 감소분 ①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체적인 이득은 ③이 된다. 이와 같이 소국이 대외관세를 대국보다 아주 조금 낮게 부과할 경우 소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소국은 관세수입을 얻게 된다. 이는 대국보다 낮은 관세부과로 소국의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하여 대국은 더이상 소국에 재화 판매하지 않고 대신 소국은 기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므로 새롭게 관세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Richardson(1995)은 두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두 나라가 영의 대외관세를 채택하는 것이라

고 결론지었다. 두 대국의 대외관세가 같은 수준일 때 그 중 한 국가가 관세를 상대국보다 아주 조금 낮게 낮출 경우, 자국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더 값이 비싸진 상대국에 수출을 하게 되고 그 수출물량만큼 자국에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므로 관세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대외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가는 상대 회원국의 수출로 인하여 그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관세수입 차이로 두 나라의 후생함수와 두 나라의 대외관세가 동일한 점에서 비연속적 함수 관계를 나타내므로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Nash)균형은 두 국가가 영의 관세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림 III-1] 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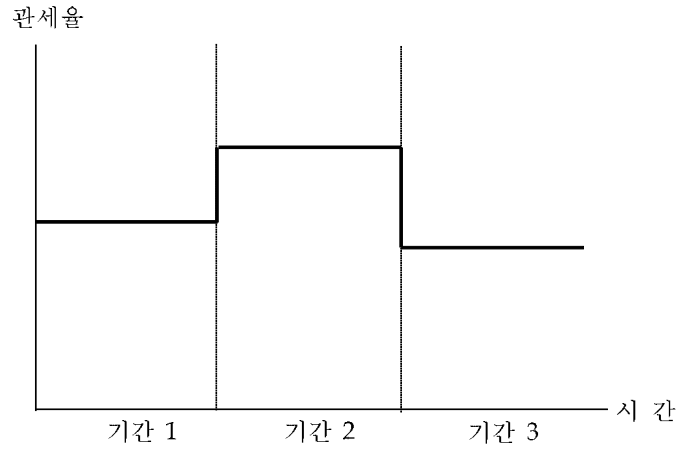

Kyle Bagwell and Robert Staiger(1993)는 자유무역협정이 다자간 관세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대외관세변화에 대해서는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그림 III-2] 참고). 제1기는 다자간 협정 아래서 서로 교역을 하는 상태이며, 제2기는 서로간의 교역은 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국가는 서

로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협상을 하고 있는 전환기이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시기이다.

정재호(2000, 2001)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정재호(2000)는 소국과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재호(2001)는 소국과 소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관세 및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재호(2000, 2001)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양국의 국내시장가격 특히 국내소비자와 국내생산자들의 시장가격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가. 자유무역협정 가입 후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 변화

자유무역협정 가입으로 인한 가격효과만을 보기 위해 우선 두 국가(A와 B)는 자유무역협정 가입 전 동질적인 상품 X를 기타 다른 나라들(rest of the world)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가정하자[13].

국가 i는 X 재화에 대해 MFN 관세 t^i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 i의 국내시장가격은 $p^i(=p^W+t^i)$, 수요와 공급은 각각 $D^i(p^i)$와 $S^i(p^i)$로 표시된다.

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t^A > t^B \geq 0$, 즉,

13) 만약 두 나라가 X 재화를 수출하고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이들 국가의 국내시장가격과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국가의 수출재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과 동일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품판매의 재분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 한 국가가 X 재화를 수입하고 있을 경우 두 국가의 국내시장가격이 다르기에 자유무역협정은 그 재화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다.

$p^A > p^B \geq p^W$)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자[14]. 위의 가정 아래서 B국의 생산자는 X 재화 가격이 자국보다 높은 A국에 X 재화를 판매하려 할 것이다[15]. 하지만 반대로 A국의 생산자는 가격이 낮은 B국에 X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림 Ⅲ-3]은 A국의 수요곡선과 양국(A국과 B국)의 가능한 모든 총공급곡선 S^{A+B}를 나타낸다.

[그림 Ⅲ-3] 자유무역협정 내 수요 및 총공급곡선

14) 관세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관세가 아닌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핵심 쟁점사항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이 없을 경우 비회원국들은 협정 회원국 중 관세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을 통해 여타 회원국으로 수입품을 재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낮은 관세율이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대외 관세율이 되며 그 밖의 회원국의 대외 관세율은 무의미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완벽한 원산지규정, 즉, 회원국 간의 교역은 해당 회원국에서 생산한 것에 한해 無稅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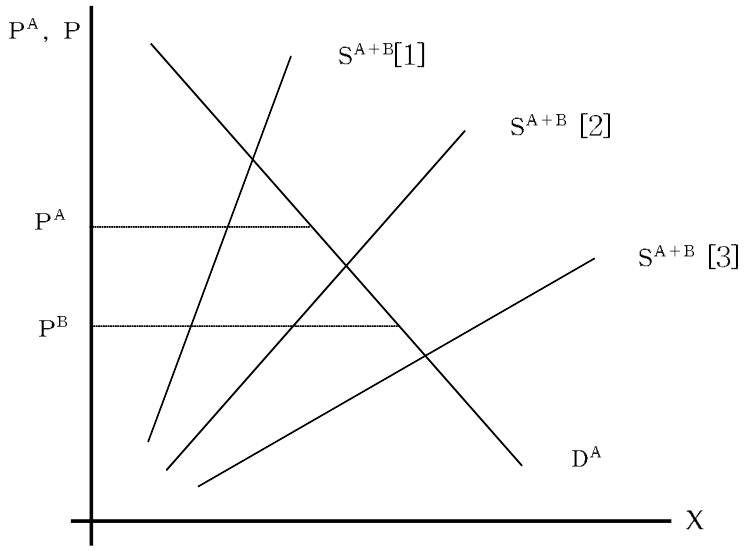

첫째, A국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전 국내시장가격인 p^A에서 양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은 [그림 Ⅲ-3]에서 총공급곡선 $S^{A+B}[1]$을 의미한다[16].

가정[1] $$S^A(p^A) + S^B(p^A) < D^A(p^A).$$

이 경우 A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도 기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속 X 재화를 수입하여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변동이 없다. B국의 생산자는 전량을 값이 비싼 A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B국의 소비자는 전량 기타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소비를 충족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A국과 B국의 소비자는 자유무역협정 전과 같이 서로 다른 국내시장가격을 지불하지만, 양국의

16) Grossman & Helpman(1995b)은 이러한 경우를 'enhanced protection'이라고 일컬었다.

생산자는 동일한 가격(값비싼 A국의 국내시장가격)을 받게 된다.

둘째, 반대로, 양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은 [그림 Ⅲ-3]에서 총공급곡선 S^{A+B}[3]을 의미한다[17].

가정[2] $$S^A(p^B)+S^B(p^B)>D^A(p^B).$$

B국의 생산자는 우선 값비싼 A국에 수출을 하나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B국의 국내시장가격과 동일할 때까지 하락한다[18]. 따라서 B국의 생산자는 양국에 X 재화를 판매한다. A국은 더이상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지만, B국은 A국에도 X 재화를 판매하기에 전보다 더 많은 양을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지만 B국의 국내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B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없으나,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하락하여 B국과 동일하게 되므로 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시장가격은 동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간경우로 [그림 Ⅲ-3]에서 총공급곡선 S^{A+B}[2]를 생각할 수 있다[19].

---

17) Grossman & Helpman(1995b)은 이러한 경우를 'reduced protection'이라고 일컬었다.

18) 만약 B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더 하락할 경우 B국의 생산자는 값싼 A국에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자국에만 판매하므로, A국의 시장가격은 다시 상승하여 결국 B국의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19) Grossman & Helpman(1995b)은 이러한 경우를 'intermediate case'이라고 일컬었다.

가정[3] $S^A(p^{A'}) + S^B(p^{A'}) = D^A(p^{A'})$ *where* $p^B < p^{A'} < p^A$.

B국의 생산자는 우선 값비싼 A국에 수출을 할 것이며,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하락하여 p^A와 p^B 사이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A국은 더이상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B국의 수출로써 자국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킨다. B국의 생산자는 A국에만 X 재화를 판매하기 때문에 B국의 소비자는 전량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킨다.

위의 세 경우를 요약하면 자유무역협정 후에도 양국이 서로 다른 소비자 가격을 가질 수 있으나[20], 생산자 가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동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후 양국이 서로 다른 대외관세를 비회원국에 부과하여도 회원국의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항상 동일하게 된다.

다음의 <표 Ⅲ-1>은 위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Ⅲ-1>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국내시장가격 변화

	가정[1]	가정[2]	가정[3]
A국의 생산자 가격 B국의 생산자 가격	p^A	p^B	$p^A > p > p^B$
A국의 소비자 가격	p^A	p^B	$p^A > p > p^B$
B국의 소비자 가격	p^B	p^B	p^B

나. 가정[1]인 상태에서의 최적 관세

20) 두 번째 경우에만 양국의 소비자 가격이 동일하게 된다.

두 국가가 가정[1]인 상태라는 가정 아래서 정재호(2000)과 정재호(2001)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 관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재호(2000)는 소국과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의 최적 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재호(2001)는 소국과 소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 대외관세 및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일한 수입재화에 대해 소국과 대국 모두에게 현재의 세계시장가격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국내시장가격은 MFN 관세가 얼마 만큼 부과되느냐에 의해 어느 재화의 국내시장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다. 정재호(2000, 2001)는 양국은 여러 교역재를 가지고 있으며, MFN 관세 크기로 인해 국내시장가격도 상대국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혹은 낮은 경우도 있음을 가정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의 대외관세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보다 기존의 자국관세가 낮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는 이 부문의 대외관세는 무세(0)로 하는 것이 최적임을 밝혔다.

현재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위해 부과되고 있다. 즉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시장가격이 세계시장가격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높은 국내시장가격으로 소비자의 잉여는 감소하고 반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관세부과로 국가는 관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지만 소국의 경우 이러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면 관세부과로 경제적인 왜곡이 발생하여 항상 전체 후생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국가 전체적인 후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는 유치산업과 같이 일정기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혹은 농산물과 같이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국가 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과 다

원적 기능[21] 등으로 인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대외관세가 A국보다 높다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A국 생산자는 상대국(B)의 시장가격이 A국보다 높기에 상대국에 무관세로 관세부담 없이 수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1]에 의해 A국 생산자는 상대국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대외관세와 상관없이 상대국의 대외관세로 인한 높은 시장가격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A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새로운 관세정책을 고려할 때 A국의 생산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자국의 생산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곳으로부터 높은 이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국은 자국의 소비자만을 고려하여 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곧 무관세(0)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소비자만을 고려할 때 관세부과는 소비자의 잉여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수입은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한 소비자 잉여 감소보다 항상 작게 된다. 따라서 저관세 부과 분야의 최적관세 정책은 0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관세 부과 분야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국이고 협정 상대국은 소국[22]인 경우에는 대국은 저관세 부과 분야에 대해 여전히 양(+)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 관세가 된다[23]. 이는 대국은 국제무역의 정의에 의해 세계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효과(terms of trade effect)로 여전히 양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

21) 비교역적, 다원적 기능으로는 식량안보, 자연환경보전, 경관효과, 생물다양성, 농촌의 쾌적성, 홍수조절, 토지보전효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22) 협정 상대국이 대국인 경우는 Richarson(1995) 참고.

23) 자세한 사항은 정재호(2000, 2001) 참고.

앞서 설명한 경우와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의 기존 대외관세가 협정 상대국의 MFN 관세보다 높을 경우를 살펴보자. 각국은 각기 다른 크기의 대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이러한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유무역협정 가입 이후에는 이 부문의 대외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임을 증명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A)의 관세가 높아서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협정 상대국(B)이 이 분야에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A국은 이미 최적의 대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수입이 증가하여 그만큼 A국의 관세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A국은 B국에 대외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1]에 인해 국내시장가격에도 변동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국이 대외관세를 높일 경우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여 그만큼 B국은 더 많이 공급하게 된다. 대외관세상승과 함께 B국이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관세수입의 감소는 전보다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B국의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이 A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A국은 대외관세를 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관세 분야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가입 이후에는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것이 최적의 정책이 된다[24]. 정확한 수치는 양국의 공급과 수요곡선의 탄력

24) 자세한 사항은 정재호(2000, 2001) 참고.

성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1]의 상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최적 관세정책은 관세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다. 가정[2]인 상태에서의 최적 관세

한편, 두 국가가 가정[2]인 상태라는 가정 아래 최적 관세 수준을 살펴보자.

B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B국의 국내시장가격과 동일할 때까지 하락한다. 따라서 양국의 국내시장가격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A국의 대외관세는 무의미하다. 외형상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수입은 B국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A국은 전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수입도 얻을 수 없다. 또한 A국이 B국의 대외관세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A국이 B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무도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A국의 국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A국이 B국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B국은 A국의 시장가격이 자국보다 낮기에 A국에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A국의 수입 수요는 전과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어 충족될 것이다. 다시 말해 A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 수입이 전혀 없다가 상대국인 B국의 관세 수준보다 아주 조금 낮게 부과함으로써 새롭게 관세수입을 얻게 된다. 따라서 A국에는 B국의 관세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유인이 있다.

그러면 B국은 어떠한가. B국은 A국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수출을 한다. 따라서 A국에 수출하는 양만큼 B국은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야 B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B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인해 새로운 관세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관세수입 총액은 관세율에 B국이 A국에 수출하는 양만큼의 수입의 곱으로 결정된다. 이때 A국이 자국의 대외관세를 낮춘다면, B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얻는 이득은 전혀 없게 된다. 하지만 B국도 A국 관세보다 아주 조금 낮게 책정한다면 다시 B국의 생산자는 A국에 수출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시 추가적인 관세수입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양국의 서로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하여 유일한 내쉬(Nash) 균형은 양국이 0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정[2]는 수입국(A)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큰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시장가격의 큰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전세계에 대해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관세는 이론상 0으로 관세정책이 무의미해지므로 다음 장에서 논의할 관세인하 일정의 적절한 설정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이로 인한 경제구조 조정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주요국의 대외관세 정책

이번 절에서는 NAFTA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CER (Closer Trade Relations Trade Agreement)로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칠레의 대외관세 정책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WTO, OECD, 그리고 USTR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

리해 본다.

우선 결론적 이들 국가들의 대외관세 정책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세인하 이유가 과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오직 WTO의 관세협상의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설령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관세인하효과가 있다 하여도 곧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개최될 경우 이를 금방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WTO 관세협상에서 생색을 내며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기에 이 두 효과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대외관세정책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변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외관세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가.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로 전세계 수출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역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7.2%에서 1990년 20.6%, 1995년 23.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조정하였다.

① MFN에 기초한 WTO 다자간 협상
② 지역무역협정
③ 양국간 협상을 통한 제 3국의 시장개방

첫 번째 WTO 다자간 협상은 물론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지

역무역협정도 WTO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 호황을 누렸다. 1992~1996년 기간 사이 실질 GDP 증가율은 2.8%이었으며, 1997~1998년 사이에는 3.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소비 및 투자지출의 증가는 곧 수입량의 증가를 가지고 왔다. 위의 기간 동안 수입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도 높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NAFTA에 의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도 장기간의 호황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단순히 MFN 관세[25]가 적용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1996년 6.4%에서 1999년 5.7%로 낮아졌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ITA 협정의 내용들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평균관세율은 4.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미국의 실제 적용된(applied) 관세는 2.8%로 추정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무세 혹은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거의 1/3에 가까우며, 1998년 기준 수입량의 60%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는 WTO 관세협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무역협정국들과의 교역증가와 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동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산물의 수출 증가와 함께 세계시장가격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보조금도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자의 이윤 상승이 그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수단(예를 들어 대외관세 따위)을 감소하여도 그들의 이윤을 지지할

25) 미국에서 MFN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으로,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베트남 등이다.

수 있으므로 그만큼 보호를 줄일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이 가능하다.

수입수량 제한된 품목의 할당 외 관세는 평균 50%로 매우 높으며, 할당 내 부과되는 MFN 관세도 평균 약 10%로 미국의 전체평균 관세수준보다는 높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NAFTA 우대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할당량 내에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유예기간이 모두 지나 완전히 이행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스라엘의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994년 기준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44%가 교역특혜를 받고 있는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NAFTA에 의해 각각 88%와 67%의 특혜를 받고 있다.

1996년 이후 미국이 새롭게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한 것은 없다. 그러나 NAFTA에 의해 멕시코에 대한 두 번째 관세율 인하가 1998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캐나다와 미국 간 NAFTA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완전 무세가 199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어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실시되었다.

나. 멕시코

1990년 이후 멕시코 무역정책의 근간은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1994)와 함께, 칠레와의 Economic Complementarity Agreement (1992), 콜롬비아 및 베네주엘라와의 Group of Three FTA(1995), 볼리비아 및 코스타리카

와의 자유무역협정(1995) 등 다수의 무역특혜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멕시코의 무역정책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보다는 무역특혜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이루고자 함이다. 특히, NAFTA는 멕시코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교역규모가 가장 큰 인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일 뿐만 아니라[26] 이러한 NAFTA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이 멕시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역특혜협정을 추진하여 교역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남미와 유럽 국가들과도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7].

멕시코는 1986년에 GATT에 가입했으며 현재 모든 관세는 양허(binding) 되어 있다. 1993부터 1997년 사이 멕시코는 12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일방적으로 MFN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로써 무관세 적용 품목은 414개(1993년)에서 1,658개(1997년)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대개 농업,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 섬유, 인쇄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계들이다. 멕시코가 WTO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외관세를 철폐한 것에는 그동안 멕시코가 집중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 등은 미국이 할당량을 정하여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할당 외의 물량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멕시코에 대해서는 NAFTA 우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낮은 우대관세로 인한 미국으로의 수출증가는 멕시코로 하여금 자국의 대외관세를 철폐할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

26)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1992년 75%에서 1996년 80%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미국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27) 멕시코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MERCOSUR 등 약 33개국과 지역무역협정 혹은 관세인하 및 투자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와의 양자간 협정도 진행중에 있다.

단순 평균관세율은 1997년 기준 13%이며, 가중평균관세율은 1993년 7.8%에서 1996년 2.9%, 1997년 2.7%로 매우 낮아졌다. 교역가중치를 이용한 평균 관세율도 낮아졌지만 단순 평균 MFN 관세율(13.2%)과 미국에 대한 특혜관세율(4.2%)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멕시코의 대미 교역량 비중의 증가로 이어졌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국과 여타 다른 국가와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펴는 분야로는 제조업 수출 보조정책이 있다. 이러한 수출 보조 정책은 NAFTA 내에서는 철폐될 예정이지만 기타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는 계속 적용되고 있어 협정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고 자유화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에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핵심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면서, 이스라엘 및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코스타리카, EFTA, 그리고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94년 캐나다 정부는 복잡해진 관세율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 목적은 첫째, 국내 생산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 아래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관세율을 설정하며, 둘째, 제도 자체를 간단하게 만들어 투명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1995년부터 공산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MFN 관세가 낮추어졌으며, 1996년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1998년에 관세부과 품목 수를 만천개에서 8천개로 축소하고

관세율이 2% 인하인 관세율은 0%로 낮추었다. 이런 결과 1996년 약 ⅓ 정도의 물품이 MFN 혹은 협정에 의해 관세 부과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약 90%이상의 물품이 무세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가중 평균 관세율도 1996년 1.6%에서 2000년 현재 약 0.9%이다. 관세가 2% 인하인 품목의 관세를 0%로 낮춘 것은 WTO 관세협상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대외관세 인하 동기와 함께 많은 부분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단순 MFN 평균 관세율은 1996년 9.2%에서 1998년 7.7%, 2000년 7.1%로 높게 나타나며, 내구재의 평균 관세율은 이보다 더 높아 1996년 14%, 2000년 1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높은 관세율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그만큼 관세의 부담없이 수입되는 품목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특혜협정으로 인하여 완전 자유화되었다. 관세 할당이 되어 있는 유제품과 사육 조류에 대해서는 200~3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할당량 이상으로의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할당량 이내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대부분 칠레 등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의해 수입되며, 할당량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200~3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제품(우유와 치즈 따위)은 29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세는 무역특혜협정에 의해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캐나다에 수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인 대우로 역외국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다른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를 비교해 보면 더욱 자명하다. 1996년 기준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평균 1%이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MFN 평균 6.6%이다. 따라서 캐나다 수출의 약 4/5, 수입의 2/3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역외국의 교역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라. 호주

호주는 뉴질랜드와 1980년 초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로 호주는 줄곧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호주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1993/1994년 4.1%에서 1996/1997년 2.8%, 2000/2001년 2.2%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1987년 기준으로 볼 때 약 72% 하락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996년 이후 0~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섬유,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995년 기준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40%, 신발 30%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이들의 관세율은 25%로 낮추어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승용차 및 그 부품에 대해 1995년 27.5%에서 1995년 25%, 1996년 22.5%, 2000년 1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ustralian Industrial Commission에서는 2000년 이후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5%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으나 호주정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동결하고 추후 교역 대상국의 관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섬유, 의류, 신발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 현재 관세율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호주에서 할당량을 정해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8개에 불

과하다. 절반은 치즈 관련 제품이며 나머지 절반은 담배 관련 제품들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할당 내 관세율은 평균 7%, 할당 외 관세율은 평균 27%이다. 대부분의 할당량은 협정 상대국인 뉴질랜드에 의해 충족될 것이므로 역외국이 고관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 다음에 설명할 뉴질랜드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적은 품목에 대해 가장 낮은 관세로 할당량을 정하고 있다.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이후인 1985년부터 관세인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 당시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1988년 기준 수입의 93%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1992년부터 계속된 관세 인하정책으로 1996년 기준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0~14%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민감한 품목인 자동차, 타이어, 섬유, 커튼, 카펫, 의류, 및 신발 등은 관세 인하정책에서 제외되었다. 1996년 기준 승용차는 25%, 타이어 15%, 의류 및 신발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매년 2.5%p 씩 인하되어 2000년에 15%, 그리고 2001년에는 0%로 낮출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1996년 기준으로 20% 이상인 관세율은 2000년까지 15%로, 15~20%인 관세율은 10%로, 5~15%이하인 관세율은 5%로 낮추고 5% 미만인 관세율은 1988년까지 철폐하였다. 2000년 현재 약 95%의 품목이 관세 부과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가중 평균 관세율은 0.7%로 아주 낮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4개 품목(HS 6단위 기준)만이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품목으로는 사과, 배, 그리고 2종류의 맥주맥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할당 내 관세율은 무세이며, 할당 외 관세율은 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그러나 1996년 이후로 할당량이 초과한 적이 없었기에 7%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바. 칠레

칠레는 1970년대 말부터 단일 관세제도(Uniform Tariff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써 1991년 기준 수입재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단일세율은 1995년 11%로 낮추어졌고 1999년부터는 매년 1%p 씩 인하하여 2003년까지 6%로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단일 관세제도와 독자적인 세율 인하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칠레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칠레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해 이러한 투명한 관세제도가 복잡해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28]. 칠레가 이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캐나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MERCOSUR 등이 있고 이외에도 볼리비아,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쿠바, NAFTA, FTAA, EU 등과도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협상중에 있다[29].

WTO에 보고된 대부분의 품목이 최고 세율은 단일 세율보다 훨씬 높은 35%이었으나 1995년부터 25%로 낮추어졌으며, 일부 밀(소맥), 밀가루, 식물성 기름 및 설탕의 경우 최고 3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가되는 품목은 중고 서적으로 16.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되어

---

28) 이러한 견해를 대외관세정책 변화와 연관시켜,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외관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한 관세율 균등화정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29) 칠레의 무역특혜협정 체결 현황은 <표 Ⅳ-7> 참고.

있다. 반면 컴퓨터 제품과 서적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칠레는 농산물에 대해 가격제한정책(price band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 정부가 원하는 국내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해 11%의 기본관세율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표 III-2>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세화 비중

(단위 : %)

체결 국가	전체 품목 대비 무세화 품목 비중	단계별 무세화 비중	무세화 누적 비중
에콰도르	96.8	96.4(1997년) 0.4(2000년)	96.4(1997년) 96.8(2000년)
콜롬비아	91.1	85.3(1997년) 5.8(1999년)	85.3(1997년) 91.1(1999년)
MERCOSUR	100.0	63.0(2004년) 15.4(2006년) 19.7(2011년) 0.8(2012년) 1.1.(2014년)	63.0(2004년) 78.4(2006년) 98.1(2011년) 98.9(2012년) 100.0(2014년)
멕시코	98.3	95.2(1996년) 3.1(1998년)	95.2(1996년) 98.3(1998년)
베네수엘라	96.4	91.1(1997년) 5.3(1999년)	91.1(1997년) 96.4(1999년)

자료 : 어명근 외(1999).

Ⅳ. 관세유예기간

1. 개념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는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모든 재화에 대해 무세로 회원국간에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은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와 여건에 의해 특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러한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대외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한 순간에 철폐하여 무관세로 개방을 할 경우, 현재 높은 대외관세로 보호받고 있던 해당 분야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30].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로 전환하는 것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후로 연기하곤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품목에 관세유예 혜택을 줄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둘 것인가가 협상의 큰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

30) 본 보고서에서 관세유예기간을 논의할 때의 관세는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대내 관세(internal tariff)를 의미한다. 앞서 제Ⅲ장에서 언급한 최적관세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모든 국가들과의 교역에 적용되는 대외 관세(external tariff)를 의미하므로 협정 상대국에만 적용되는 관세와는 다르다.

관세유예기간[31]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GATT/WTO의 권고안에 의하면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유예기간이 이보다 길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GATT/WTO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부분의 관세유예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NAFTA에서 멕시코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15~18년까지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칠레와 캐나다, 칠레와 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칠레는 밀과 밀가루에 대해 18년의 유예기간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현재 세계시장으로부터 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국 산업에 비교 우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거나 혹은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 국가 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한 예로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높은 관세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몇몇 산업에 대해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그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혹은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데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

31) 본 보고서에서 관세유예기간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일정 품목에 대해 무세로 전환하는 것을 유예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관세유예기간이라는 의미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유예)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본 보고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주요 협정의 관세유예기간

가. NAFTA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각 협정마다 회원국의 사정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NAFTA에서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살펴보자. NAFTA는 기존의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1994년 멕시코가 가입을 하면서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멕시코가 가입하기 이전 1989년 발효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관세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상품 구분을 3그룹으로 나누어 협정 발효일로부터 즉시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매년 20% 감축하여 5년 내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매년 10% 감축하여 10년 내 철폐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Ⅳ-1> 참고).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인하 일정은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1>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 계획

관세철폐 일정	품 목
1989년 1월 1일부터 철폐	컴퓨터, 미가공어류, 모피, 가죽, 위스키, 미가공우라늄, 자동판매기, 제지기기, 스키, 스케이트, 오토바이 등
1989년 1월 1일부터 매년 20%씩 인하하여 5년내에 철폐	지하전동차,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인쇄물, 화학제품(단, 제품 및 화학품 제외), 페인트, 기계·자동차보수용 부품 등
1989년 1월 1일부터 매년 10%씩 인하하여 10년 내에 철폐	자동차, 농산물, 철강, 섬유, 타이어, 의류, 합판 등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992.

이 쉽게 타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캐나다의 관세인하 방식은 인하율을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마지막 연도에 100% 관세 인하로 무세화를 달성하거나,

<표 Ⅳ-13> B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 하 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3	28.6	42.9	57.1	71.4	85.7	100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캐나다 FTA: 캐나다의 대칠레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혹은 구체적인 관세율을 매 해마다 정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마지막 연도에 무세화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 Ⅳ-14> Bn1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 하 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P 인하[1)]	4%P 인하[1)]	8	6	4	2	0

주 : 1) 전년도 기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캐나다 FTA: 캐나다의 대칠레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에 반해 칠레는 구체적인 관세율을 매 해마다 명시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관세인하를 미루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 칠레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칠레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10년 안에 대부분의 관세를 무세화하고자 하였으며, 품목별로 무관세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세유예일정을 합의하였다. 모든 농산물은 2014년까지 무세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칠레와 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시기 칠레 농민들은 농산물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관세인하 계획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관세인하 일정을 결정하였으며, 밀과 밀가루 등의 민감 품목은 18년 간의 관세 철폐 일정을 갖게 되었다.

칠레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난 관세인하 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부속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초기(1996년)에 40%의 관세율 인하가 적용되며, 이후 점진적인 관세를 인하하여 8년차인 2004년에 완전 무세화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두류, 감귤류 및 종자 등이 있으며, 이렇게 일반관세인하에 포함되는 품목이 상호 교역량의 65%를 차지한다.

<표 Ⅳ-15>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하율	1997 (1년차)	1998 (2년차)	1999 (3년차)	2000 (4년차)	2001 (5년차)	2002 (6년차)	2003 (7년차)	2004 (8년차)
40	48	55	63	70	78	85	93	100

주 : 초기연도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둘째는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들은 다음의 관세인하일정을 따른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품목별로 관세인하율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다른 일정으로 관세를 인하한다. 초기에 무세화를 실시하는 품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속서 1에 포함된 품목들은 모두 8년차인 2004년에 무세화된다.

<표 Ⅳ-16> 부속서 1에 규정된 일반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하율	1997 (1년차)	1998 (2년차)	1999 (3년차)	2000 (4년차)	2001 (5년차)	2002 (6년차)	2003 (7년차)	2004 (8년차)
40	48	55	63	70	78	85	93	100
50	56	63	69	75	81	88	94	100
60	65	70	75	80	85	90	95	100
70	74	78	81	85	89	93	96	100
80	83	85	88	90	93	95	98	100
90	91	93	94	95	96	98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초기연도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셋째, 부속서 2에 명시된 민감 품목으로 관세인하 방식은 협정 발효와 함께 초기 관세가 30% 인하된 후 이를 3년 간 유지하고 그 후 매년 10%씩 인하하여 6년 후에 즉, 10년차인 2006년에 완전 자유화를 실시한다. 민감품목에는 칠레의 MERCOSUR에 대한 수출품목의 19.1%가 해당되며, 주요 농산물은 오렌지 및 체리 등이 있고 이 밖에 살충제, 무두질한 가죽, 건축용 목제품, 합성 필라멘트실, 의류, 식료품용 포장지, 흑연, 어린이용 완구 자동차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수량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MERCOSUR에 가입한 회원국에 따라 다른 수입량이 적용된다. 부속서 2에 명

시된 칠레의 양허 품목 수는 290개이며, MERCOSUR의 양허 품목 수는 311개이다.

<표 Ⅳ-17> 부속서 2에 규정된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 인하율	1997 (1년차)	1998 (2년차)	1999 (3년차)	2000 (4년차)	2001 (5년차)	2002 (6년차)	2003 (7년차)	2004 (8년차)	2005 (9년차)	2006 (10년차)
30	30	3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 초기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넷째, 부속서 3에 명시된 민감 품목[38]이다. 이들 품목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율이 협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4년차인 2000년부터 관세율을 14% 인하하여 그 후 7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6년에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부속서 3에 명시된 칠레의 양허 품목 수는 193개이며, MERCOSUR의 양허 품목 수는 208개이다.

<표 Ⅳ-18> 부속서 3에 규정된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 인하율	1997 (1년차)	1998 (2년차)	1999 (3년차)	2000 (4년차)	2001 (5년차)	2002 (6년차)	2003 (7년차)	2004 (8년차)	2005 (9년차)	2006 (10년차)
0	0	0	0	14	28	43	57	72	86	100

주 : 초기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38) MERCOSUR는 부속서 3에 포함된 농산물로 신선 토마토만이 있다.

다섯째는 부속서 6에 명시된 특별 민감품목으로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관세인하가 유예된 후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쇠고기, 가금류(거위, 오리 등), 조란, 양파・쪽파・마늘・부추 따위, 밀, 쌀, 식용유,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 고무제품, 종이로 된 포장용지, 진공펌프 및 팬, 기타 사무용 기기, 유선용 전화기, 트랙터 및 수송용 자동차, 가구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수량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MERCOSUR에 가입한 회원국에 따라 다른 수입량이 적용된다. 부속서 6에 명시된 칠레의 양허 품목 수는 151개이며, MERCOSUR의 양허 품목 수는 139개이다.

<표 Ⅳ-19> 부속서 6에 규정된 특별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하율	2006 (10년차)	2007 (11년차)	2008 (12년차)	2009 (13년차)	2010 (14년차)	2011 (15년차)
0	17	33	50	67	83	100

주 : 초기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한편, 부속서 8에 명시된 특별 민감품목으로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11년 동안 관세인하가 유예된 후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설탕(HS 1701)이 있다.

<표 Ⅳ-20> 부속서 8에 규정된 특별 민감품목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하율	2007 (11년차)	2008 (12년차)	2009 (13년차)	2010 (14년차)	2011 (15년차)	2012 (16년차)
0	17	33	50	67	83	100

주 : 초기 인하율은 1996년 10월 1일에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MERCOSUR FTA: 칠레의 대MERCOSUR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마지막으로, 가장 오랜 관세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품목인 밀과 밀가루의 경우 2003년에 관세인하 일정이 논의되어 무세화는 18년차인 2014년에 무세화가 이루어진다.

<표 Ⅳ-21> 칠레와 MERCOSUR의 관세유예 품목

	분 류	품목수	농산물 품목수 및 품목명	
칠레	특별 민감품목	158	89	밀 및 가공품, 식용류, 쇠고기, 쌀, 설탕, 일부 과실가공품, 커피, 포도주 등
	민감품목 (부속서 2)	290	90	옥수수, 귀리, 보리, 돼지고기, 가금육, 쵸콜렛, 빵류 등
	민감품목 (부속서 3)	193	0	
MERCOSUR	특별 민감품목	143	42	과일류(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일부 과일 가공품, 커피, 포도주 등
	민감품목 (부속서 2)	311	87	올리브, 아보카도, 오렌지, 체리, 살구, 식용류, 쵸콜렛, 빵류, 과일 가공품 등
	민감품목 (부속서 3)	210	1	신선 토마토

자료 : 어명근 외(1999)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와 같은 협상 결과 칠레의 대 MERCOSUR 수출품목의 60%는 8년차에, 26%는 10년차에, 14%는 15년차에 완전히 관세가 철폐되며, 반면 MERCOSUR의 대칠레 수출품목의 65%는 8년차에 무관세화 이루어지고, 27%는 10년차에, 8%는 15년차에 각각 무관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예외품목이 있어 예를 들어 밀과 밀가루 등은 18년차에 무관세화가 이루어진다.

<표 Ⅳ-22> 관세유예 품목이 차지하는 교역비중

(단위 : %)

관세인하 기간	칠레의 對MERCOSUR 수출	MERCOSUR의 對칠레 수출
8년	60	65
10년	26	27
15년	14	8

자료 : 어명근 외(1999)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마.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호주와 뉴질랜드는 1965년 양국간의 교역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양국간의 관세면제 대상품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교역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영연방국가의 일원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시장단일화를 위해 1983년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 결과 양국은 서로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 5년 내에 자유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에는 민감한 분야로 남아있던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시켜 1990년 7월 양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관세인하는 양국의 교역규모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뉴질랜드의 호주에 대한 수출은 1981년 8억달러에서 1990년 17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호주도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이 1981년 11억달러에서 1990년 19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뉴질랜드가 계속해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수입에 비해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전보다는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다.

<표 Ⅳ-23> 뉴질랜드의 對호주 교역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1	801	1,079	-278
1982	757	1,103	-346
1983	702	1,029	-327
1984	833	1,252	-419
1985	912	1,026	-114
1986	929	980	- 51
1987	1,130	1,475	-345
1988	1,535	1,587	- 52
1989	1,675	1,830	-155
1990	1,727	1,931	-204

자료 : KOTIS

관세유예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초기 관세율이 5% 미만인 경우 혹은 종량세일 경우 이와 등가인 경우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관세율이 5~30% 사이인 경우 협정 발효와 함께 5%포인트를 인하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

이상의 고관세인 경우 이 관세율을 6으로 나누어 초기 연도와 함께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예외 품목으로는 냉동감자, 감자가루, 포도주, 합판, 카페트, 철강, 가전제품(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백색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이 있다. 이러한 예외 품목은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늦추는 것들로 부속서 등에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자 가루의 관세율은 1983년부터 인하하되 종량세를 혼합하여 1990년에 완전 무세화를 시행하였다. 다음의 표들은 한 예에 불과하며, 포도주 등은 가격과 용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혼합관세를 부과한다.

<표 Ⅳ-24> 감자가루의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호주의 관세	뉴질랜드의 관세
1983	40	16
1984	20	8
1985	10	4
1986	0	0

자료 : Australis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Ⅳ-25> 포도주의 관세 인하 일정

	호주의 관세	뉴질랜드의 관세
1986	68¢/리터 + 10%	68¢/리터 + 10%
1987	51¢/리터 + 5%	51¢/리터 + 5%
1988	34¢/리터 + 5%	34¢/리터 + 5%
1989	17¢/리터	17¢/리터
1990	0	0

자료 : Australis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3. 관세유예기간 설정

앞서 여러 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난 관세유예기간에서 보듯이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다양한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 및 기간, 다양한 품목, 그리고 방법들을 이용하여 점차 인하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각 국이 협정 상대국에 적용될 관세인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관세인하기간 설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아주 미진하다. 그 중 한 논문으로 Kowalczyk and Davis(1996)가 있다. 그들은 NAFTA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에 설정된 관세인하기간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양국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결론으로는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미국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또한 산업간 교역이 활발한 산업, 다른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많은 산업은 보다 짧은 관세유

예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멕시코의 경우에는 현재의 대외관세율과 관세유예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자국의 관세율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미국에서 보듯이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 대외관세가 높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국이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일시에 협정 상대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그 분야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런 대외관세율과 크게 관계없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Kowalczyk and Davis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압력에 의해 멕시코가 협상에 단지 끌려갔을 수 있으며, 둘째, 멕시코의 경우에는 관세유예기간의 설정보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며, 자국의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임으로 인해 외국의 직접투자 등이 증가할 수 있는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다른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짧은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반면 멕시코는 이와 반대로 장기의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멕시코의 대외수출이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서 이는 미국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멕시코가 미국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칠레와 멕시코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에서도 보았듯이 사과에 대해서

는 양국이 동일한 기간에 걸쳐 양국에 적용되는 대내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칠레와 캐나다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에서도 무세화 제외 품목을 양국이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칠레가 MERCOSUR보다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더욱 관대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도 칠레가 향후 NAFTA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욱 큰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접근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멕시코가 NAFTA로부터 얻는 이득에 의해 관세유예기간을 조정한 것과 같이 칠레도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높은 대외관세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몇몇 산업에 대해 NAFTA 협상 결과 장기의 관세유예기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멕시코 정부도 더이상 해당 산업을 보호할 수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구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면 NAFTA로 인해 자연히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NAFTA를 멕시코 경제의 구조조정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해당 분야의 대외관세 수준, 산업간 교역 규모, 다른 여타 국가와의 교역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이해득실, 앞으로의 자국에 미칠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각 국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하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무세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그 상품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경우 즉,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도 그 상품에 대해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아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대해 전면 수입개방을 하여도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나라(rest of the world)에 대한 수입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무세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관세유예기간을 논할 필요가 없다.

관세유예기간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증가하여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충족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대체하는 경우이다. 우선 첫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외관세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공급량이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 그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분야에 대한 관세가 무세가 될 경우 상대국은 모든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다가 관세만큼을 더한 금액이 되어 상대국의 공급업자는 세계시장에 수출을 하는 경우보다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관세만큼의 이익을 더 보게 된다.

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보자. [그림 Ⅳ-1]에서 보듯이 상대국 공급업자는 세계시장에 수출을 할 경우 Pw만큼의 가격을 받게 된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국내시장가격인 P_t 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_t는 세계시장가격인 P_w에 우리나라 관세(t)만큼을 더한 금액이 되어 $P_t > P_w$이다. 그러므로 상대국의 수출업자는 세계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전량 수출을 하게 된다. 상대국의 수출업자의 공급량이 우리나라 수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국내시장가격은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점차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가격인 P_w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는 P_w보다 더 하락할 경우 상대국의 수출업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보다는 값이 더 비싼 세계시장에 수출을 하게 될 것이 때문이다.

[그림 Ⅳ-1] 국내시장의 수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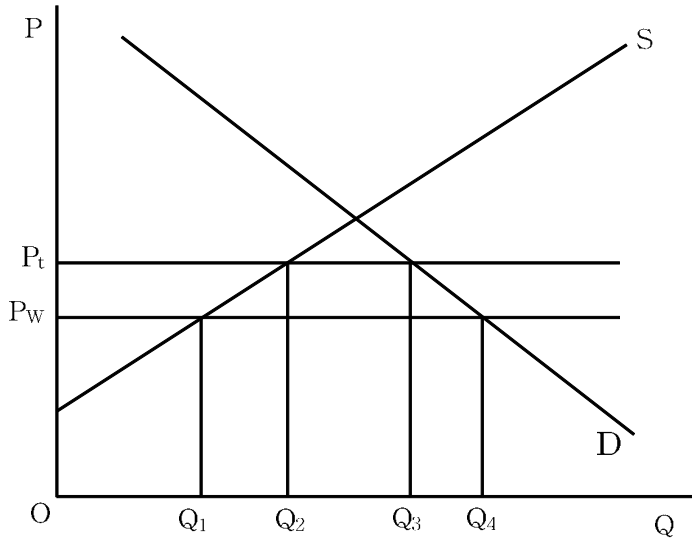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대해 양(+)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모든 수입은 상대국의 수출업자에 의해 공급이 되기 때문이며, 설령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된다 하여도 현재 국내시장가격은 세계시장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계시장가격에 관세까지 부과된 수입품은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로 위의 극단적인 경우를 완화하여 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증가시키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국의 수출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는 대외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균형분석상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손실은 관세수입의 감소인데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해 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모두에 대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다면 협정 상대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또한 두 국가간의 협정이므로 상대국도 우리나라가 수출 우위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다면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득은 없어질 것이며, 두 국가간의 협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세유예기간 설정분야는 첫 번째 경우에 치중하게 될 것이며, 협상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다음 Ⅴ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거나 혹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Ⅴ. 우리나라의 정책방안

1.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는 국가들

이번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칠레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뉴질랜드,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칠레

1998년 정부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칠레 양국 정상은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칠레(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0년 2월 제2차 협상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2000년 5월 제3차 협상이 칠레(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으며, 2000년 12월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2001년 3월에 칠레에서 열기로 예정되었던 제5차 협상은 양국간의 시장개방 문제로 연기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협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1년 1월에 투자분야 및 원산지 분야 실무협의가 미국(LA)에서 있었으며, 2001년 3월 양허안 실무협의가 칠레(산티아고)에서 이루

어졌고, 또한 2001년 10월 상하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상품 양허안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 교역현황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1982년 이후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칠레로부터의 수입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1998년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Ⅴ-1> 우리나라의 對칠레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1	107(75.0)	94(8.0)	12
1982	30(-72.0)	77(-18.0)	-47
1983	41(38.0)	98(28.0)	-57
1984	47(14.0)	104(6.0)	-57
1985	63(34.0)	148(42.0)	-85
1986	66(5.0)	128(-14.0)	-62
1987	114(72.0)	168(31.0)	-54
1988	153(34.0)	207(23.0)	-54
1989	187(22.0)	334(61.0)	-146
1990	144(-23.0)	331(-1.0)	-186
1991	269(87.0)	370(12.0)	-100
1992	326(21.0)	365(-1.0)	-39
1993	372(14.0)	537(47.0)	-165
1994	408(10.0)	705(31.0)	-296
1995	636(56.0)	1,020(45.0)	-384
1996	640(1.0)	1,102(8.0)	-462
1997	655(2.0)	1,162(5.0)	-506
1998	566(-13.0)	706(-39.0)	-139
1999	455(-20.0)	815(15.0)	-359
2000	593(30.0)	902(11.0)	-308
2001	375(7.0)	449(-14.0)	-73

주 : 1. ( ) 안은 동기 증가율임
2.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우리나라가 칠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2000년 기준으로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자 및 전기기기, 섬유류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 중 칠레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살펴보면, 인조섬유직물 53%, 엘리베이

터 50%, TV 44%, 녹음기 37%, 가정용 전기기기 30%(세탁기 65%, 냉장고 31%, 전자렌지 69%, VCR 16%), 편직물 25%, 승용차 23% 등이 있다.

<표 Ⅴ-2>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단위 : 백만달러)

품목명	2000년	2001년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272.8	138.7
전자 및 전기	122.5	107.1
섬유류	64.7	34.4
화학공업제품	44.2	31.3
비금속광물제품	30.3	27.8
철강·금속제품	23.4	18.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6.2	12.7
생활용품	6.2	3.3
잡제품	1.9	1.0
1차산품	0.8	0.4
총 계	593.0	375.2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철강 금속제품, 광산물, 화학공업 생산품, 농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에 기계류, 전자제품, 섬유류, 자동차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는 반면 칠레는 우리나라에 광산물, 1차산품, 농수산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표 Ⅴ-3>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입

(단위 : 천달러)

품목명	2000년	2001년
철강·금속제품	463,948	210,948
광산물	255,513	144,028
화학공업 생산품	117,077	57,796
농림수산품	64,705	35,19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90	839
섬유류	567	181
전자 및 전기	11	29
기타제품	5	10
총 계	902,017	449,022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이러한 양국간의 교역현황은 칠레의 산업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칠레는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낮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칠레의 주요 수출상품도 동을 비롯한 광물과 농산물 등 1차 산품이며, 특히 동은 칠레 수출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도,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수출도 전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4> 칠레의 GDP 산업별 구성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농목축업	7.5	7.3	6.9	7.1	6.9	7.1	6	9.1
어 업	1.1	1.1	1.1	1.2	1.2	1.3	1.5	1.9
광 업	9.4	8.6	8.2	8.0	7.9	9.1	8.2	8.9
제 조 업	17.6	17.6	17.4	17.1	16.8	17.8	15.3	16.1
서비스업	64.4	65.4	66.4	66.6	67.2	64.7	69.0	64.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998년은 6월까지 누계임.
자료 : 송유철(1999)

2) 최적관세 및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

1999년 기준으로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HS 01~24) 중 그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은 다음의 <표 Ⅴ-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6단위 기준으로 35개 품목이 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주로 광산물 및 1차 산품으로 양허세율이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만약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이러한 세율이 무세화된다고 해도 농수산물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 품목별로는 우리나라가 단시일 내에 무세화할 수 없는 품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최적관세 조정과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농수산물 분야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00달러 이상인 품목만을 선정하였다. 현재까지는 수입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미미하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비관세장벽 이외의 이유로 칠레가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품의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확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칠레가 과일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수입실적은 없지만 사과와 배도 이들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1999년 기준으로 칠레로부터 1,000달러 이상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모두 33개(HS 6단위 기준)였다. 이들 품목 중에서 냉동정어리(HS 030371)는 칠레가 우리나라에만 거의 수출(99.2%)을 하고 있었으며, 신선 포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칠레로부터 수입(92.3%)하고 있다[39].

칠레는 기타 천연밀크 함유물품(HS 040690)의 85.2%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루우산의 조분과 펠리트(HS 121410)의 20.9%를, 이끼 및 지의(HS 060410)의 19.3%를, 그리고 사료용식물(HS 121490)의 18.2%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었다. 그 나머지 품목의 수출비중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신선 포도 이외에 이끼 및 지의(HS 060410)의 59.8%를, 냉동민대구(HS 030378)의 42.9%, 냉동정어리(HS 030371)의 39.3%, 그리고 비식용 어폐류 분말(HS 230120)의 20%를 칠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 품목의 수입의존 비중은 매우 낮다.

---

39) 우리나라는 신선 포도의 대부분을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그 나머지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표 Ⅴ-5>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

(단위 : 천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칠레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칠레	비중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1,300	1,290	99.2	3,284	1,290	39.3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881	13	1.5	15,836	13	0.1
030378	냉동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23,467	73	0.3	170	73	42.9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36,147	4,388	12.1	358,097	4,388	1.2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한 것)	2,760	78	2.8	145,047	78	0.1
030420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	297,332	300	0.1	46,911	300	0.6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34,930	1,177	3.4	96,639	1,177	1.2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33,848	6	0.0	23,734	6	0.0
04049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 함유물품	155	132	85.2	25,686	132	0.5
040690	기타 치즈	1,781	22	1.2	12,929	22	0.2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344	25	7.3	10,387	25	0.2
051199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비식용의 것)	4,541	30	0.7	1,833	30	1.6
060410	이끼, 지의	2,336	450	19.3	753	450	59.8
080610	포도(신선한 것)	684,633	9,454	1.4	10,242	9,454	92.3
080810	사과(신선한 것)	304,621	0	0.0	12	0	0.0
080820	배 및 마르멜로	114,299	0	0.0	10	0	0.0
081050	키위	111,251	588	0.5	7,521	588	7.8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커런트, 구즈베리(냉동한 것)	52,479	12	0.0	140	12	8.6

<표 Ⅴ-5>의 계속

(단위 : 천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칠레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칠레	비중
120991	파종용 채소종자	33,567	618	1.8	28,632	618	2.2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28,789	1,309	4.5	12,486	1,309	10.5
1214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387	81	20.9	12,666	81	0.6
121490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 근채류, 건초, 클로우바 등의 사료용식물	1,077	196	18.2	27,150	196	0.7
130219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044	3	0.3	23,565	3	0.0
130239	기타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9,984	8	0.0	5,212	8	0.2
140490	기타 식물성생산품	2,678	46	1.7	14,026	46	0.3
151590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	2,251	32	1.4	5,134	32	0.6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62,114	122	0.2	44,125	122	0.3
170490	기타 설탕과자(코코아 함유한 것 제외)	12,256	401	3.3	21,517	401	1.9
180631	코코아 조제식료품(블록, 슬랩, 바아상이며 다른것으로 속을 채운 것)	6,429	30	0.5	16,100	30	0.2
200290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토마토(식초나 초산처리한 것 제외)	101,747	1,718	1.7	19,189	1,718	9.0
200960	포도주우스(포도즙 포함)	23,417	208	0.9	20,117	208	1.0
220421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 (발효를 중지한 것 ; 2L이하 용기에 넣은것)	409,589	356	0.1	13,161	356	2.7
220429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발효중지한 것 ; 2L이하 용기에 넣은것 제외)	64,461	3	0.0	1,119	3	0.3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338,751	3,555	1.0	17,794	3,555	20.0
230990	기타 사료용조제품 (개, 고양이용 사료 제외)	9,671	373	3.9	59,620	373	0.6

자료 : KOTIS, UNCTAD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칠레가 전세계에 수출하는 금액과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그 차액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Ⅴ-6>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에서 칠레가 전세계에 수출하는 금액의 차액이 큰 순서로 정렬하였다.

이는 [그림 Ⅲ-3]과 연관하여 언급한 3가지 가정들과 연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값이 클수록 앞의 제Ⅲ장에서 언급한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타 냉동어류(HS 030379)는 칠레의 전체 수출액이 3,615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3.6억달러의 약 10% 수준이기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칠레의 수출전량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정[1]에 속하여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기타 다른 국가들(rest of the world)로부터 계속해서 기타 냉동어류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의 절대값이 가장 큰 신선 포도를 보면 칠레의 전체 수출액이 6.8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1,021만달러의 약 67배에 이르고 있다[40]. 이러한 신선 포도는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의 표는 상위에 있는 품목들은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하위에 있는 품목들은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중간은 가정[3]에 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분석의 한계는 제Ⅲ장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모든 품목에 대해 양국의 완전한 수요 및 공급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

40)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이 가장 많은 해는 1997년으로 1,847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였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가격 탄력성에 의해 즉, 양국이 혹은 어느 한 쪽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매우 클 경우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Ⅴ-6> 칠레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농수산물 규모

(단위 : 천달러)

품목코드	품 목 명	칠레수출(전체)	한국수입(전체)	차 액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36,147	358,097	321,950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한 것)	2,760	145,047	142,287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34,930	96,639	61,709
230990	기타 사료용 조제품(개, 고양이용 사료 제외)	9,671	59,620	49,949
121490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 근채류, 건초, 클로비 등의 사료용 식물	1,077	27,150	26,073
04049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 함유물품	155	25,686	25,531
130219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044	23,565	22,521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881	15,836	14,955
1214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387	12,666	12,279
140490	기타 식물성 생산품	2,678	14,026	11,348
040690	기타 치즈	1,781	12,929	11,148
05119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그들의 사체(비식용)	344	10,387	10,043
180631	코코아 조제식료품(블록, 슬랩, 바아상이며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것)	6,429	16,100	9,671
170490	기타 설탕과자(코코아 함유된 것 제외)	12,256	21,517	9,261
151590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251	5,134	2,883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1,300	3,284	1,984
060410	이끼, 지의	2,336	753	1,984

<표 Ⅴ-6>의 계속

(단위 : 천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칠레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051199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비식용의 것)	4,541	1,833	-2,708
200960	포도 주스(포도즙 포함)	23,417	20,117	-3,300
120991	파종용 채소종자	33,567	28,632	-4,935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33,848	23,734	-10,114
130239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9,984	5,212	-14,772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28,789	12,486	-16,303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62,114	44,125	-17,989
030378	냉동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23,467	170	-23,297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커런트, 구즈베리(냉동한 것)	52,479	140	-52,339
220429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발효중지한것; 2ℓ이하 용기에 넣은 것 제외)	64,461	1,119	-63,342
200290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토마토(식초나 초산처리한 것 제외)	101,747	19,189	-82,558
081050	키위	111,251	7,521	-103,730
080820	배 및 마르멜로	114,299	10	-114,289
030420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	297,332	46,911	-250,421
080810	사과(신선한 것)	304,621	12	-304,609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338,751	17,794	-320,957
220421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발효를 중지한 것; 2ℓ이하 용기에 넣은 것)	409,589	13,161	-396,428
080610	포도(신선한 것)	684,633	10,242	-674,391

자료 : KOTIS, UNCTAD

차액이 큰 양(+)의 값을 가지는 품목들은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혹은 2~3년안에 완전 무세화를 추진할 수 있는 품목들로 여겨진다. 어느 품목까지 관세유예기간을 두느냐는 양국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지만 관세유예기간은 가정[2]에 속한 품목들에게 집중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까지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1]에 속한 품목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최적관세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조정도 결정될 것이다.

절대값이 큰 음(-)의 값을 가지는 품목들은 <표 V-7>에 다시 정리하였으며,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으로 19개이다. 이러한 품목들이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로서 우리나라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분야이다.

신선 포도는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단가가 여타국가(미국)의 단가보다 낮으며, (실적)관세율도 47.5%로 매우 높기 때문에 협정 발효와 함께 완전 무세화를 할 경우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칠레는 이탈리아와 함께 전세계 포도시장의 대국으로 포도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칠레의 포도 생산량은 19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9만톤에 비해 약 4배 많은 165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약 절반 정도를 미국시장에 그리고 나머지를 유럽,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산 신선 포도는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대외관세는 0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양(+)의 대외관세를 부과하여도 칠레로부터의 수입단가가 낮고 칠레의 공급 능력이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여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선 포도의 질과 품종이 동일(homogeneous)할 수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작은 양이나마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칠레산 신선 포도의 공급가격 탄력성이 클 경우 우리나라의 무세화로 칠레의 수출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큰 칠레산 신선 포도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가장 먼저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행인 점은 칠레와 우리는 서로 정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칠레에서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지 포도의 출하가 끝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양국의 포도 출하기가 동일한 경우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적다. 다만 계절이 정반대이어도 우리나라의 시설재배에 의한 포도 출하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칠레산 신선 포도의 관세인하 일정을 결정하는 데는 이러한 포도를 시설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생산요소 재배분에 필요한 시간과 전체적으로 우리 포도 농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이들 농가의 생산요소를 재배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최소한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무조건 장기간의 관세 인하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관세 인하 일정은 우리에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더 제공하지만 그만큼 구조조정 비용도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우리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잘 알고 있다. 또한 무관세 예외품목으로 선정할 수도 있겠으나 전세계에서 신선 포도에 대해 가장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국가의 가장 비교우위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칠레에게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에 대해 무관세 예외품목을 설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이러한 협상 결과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서로간의 이득을 줄이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선 포도에 대해 현재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칠레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도 신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절관세는 적절한 협상안이라고 여겨진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관세 인하 일정을 설정하는 데는 기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자원 재배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표 V-7>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칠레)

(단위 : 천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차액 (천달러)	칠레 단가	칠레제 외단가	실적 관세율
080610	포도(신선한 것)	-674,391	1.666	1.805	47.5
220421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발효를 중지한 것; 2ℓ이하 용기에 넣은 것)	-396,428	3.466	2.838	15.0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320,957	0.603	0.606	5.0
080810	사과(신선한 것)	-304,609		1.576	0.0
030420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	-250,421	3.591	3.022	12.8
080820	배 및 마르멜로	-114,289		5.623	50.0
081050	키위	-103,730	1.318	1.761	47.5
200290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토마토(식초나 초산처리한 것 제외)	-82,558	0.887	0.852	7.6
220429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발효중지한 것; 2ℓ이하 용기에 넣은 것 제외)	-63,342	3.333	1.255	15.0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커런트, 구즈베리(냉동한 것)	-52,339	5.952	3.555	30.0
030378	냉동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23,297	3.130	0.358	1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7,989	5.577	2.679	23.4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16,303	0.896	1.161	17.5
130239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4,772	11.429	3.057	8.0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10,114	3.398	2.641	19.8
120991	파종용 채소종자	-4,935	16.205	14.349	0.0
200960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3,300	2.227	1.829	47.5
051199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비식용의 것)	-2,708	25.000	7.528	8.1
060410	이끼, 지의	-1,583	4.047	3.664	8.0

주 : 단가는 수입단가를 의미하며,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 KOTIS

신선 포도와 함께 포도주와 포도즙도 칠레에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들이다.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HS 220421, HS 220429)도 칠레의 전체 수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도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칠레의 포도주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도주와 포도즙은 신선 포도와는 달리 칠레로부터의 수입단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의 생산원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에 적은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단가는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적관세도 15%로 신선 포도에 비해 낮기에 신선 포도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사과와 배에 대해 살펴보자[41]. 사과와 배는 칠레로부터 수입이 전혀 없다. 사과의 경우에는 1998년까지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1999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8천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수입실적이 아주 작다. 따라서 현재 국내 사과 가격아래서는 수입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명목관세율이 50%인 상태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얼마만큼의 증가가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칠레는 사과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유럽과 콜롬비아 등 인접국에 수출하고 있다. 칠레의 사과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생산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과 생산량

41) 키위는 우리나라에서 칠레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전체 수입량의 85% 정도를 수입하므로 뉴질랜드에서 논의하겠다.

은 65만톤이었으며, 칠레는 85만톤으로 우리보다 약 1.3배정도 더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인접국에 사과를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생산량에서 큰 차이가 없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1999년 기준 약 2,080만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사과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칠레산 사과의 영향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배도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의 수입실적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배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로부터도 수입되고 있다. 그 수입액은 1999년 만달러, 2000년 2만 8천달러, 2001년 10월현재 9만달러로 증가추세에 있다. 칠레산 배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등 유럽과 콜롬비아 등 남미 인접국에 수출하고 있다. 칠레의 생산량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1997년을 기준으로 양국이 26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배도 중국의 배의 생산이 1999년 기준으로 약 700만톤이기에 중국산 배의 영향으로 칠레산 배가 미치는 효과는 더욱 작을 것으로 여겨진다.

포도, 사과, 배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일류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과일이 감귤, 사과, 포도, 배 순서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과일도 감귤, 사과, 포도, 배 순서로 동일하다(<표 Ⅴ-8>과 <표 Ⅴ-9> 참고).

<표 Ⅴ-8> 우리나라의 1인당 과실류 연간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감 귤	사 과	포 도	배	복숭아	기 타	총 계
1995	14.3	15.9	7.1	3.9	2.9	11.3	55.4
1996	11.9	14.2	7.8	4.7	2.8	10.9	52.3
1997	14.9	14.1	8.7	5.6	3.2	11.4	57.9
1998	11.7	9.8	8.6	5.5	3.3	10.3	49.2
1999	13.8	10.4	10.2	5.4	3.3	12.4	55.7

주 : 기타는 유자, 매실, 단감 등임.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2000.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보면 1999년 채소 특용 과수로부터 796만원, 미곡 728만원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주 수입원은 쌀을 제외하였을 경우 과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러한 과일 생산업에 대한 자원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되도록 적절한 관세인하 일정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9> 우리나라의 과실류 생산량

(단위 : 천톤)

연 도	감 귤	사 과	포 도	배	복숭아	기 타	총 계
1995	615	716	316	178	130	11.3	55.4
1996	514	651	357	219	128	10.9	52.3
1997	649	652	393	260	147	11.4	57.9
1998	512	459	398	260	151	10.3	49.2
1999	624	490	470	259	157	12.4	55.7

주 : 기타는 유자, 매실, 단감 등임.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2000.

파종용 채소종자(HS 120991)는 <표 V-7>에서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자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영향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나. 뉴질랜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1999년 7월 뉴질랜드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제의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인 1999년 9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2000년 3월 양국의 연구진들의 제1차 업무협의가 뉴질랜드(웰링턴)에서 개최되었으며, 2000년 11월 제2차 업무협의가 우리나라(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 교역현황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지난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표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98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수출 감소와 함께 수입감소가 더욱 두드러져 무역수지 적자폭이 잠시나마 줄어드는 듯 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 및 전기기기, 화학공업제품, 철강 금속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농림수산물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화학공업 생산품, 철강 금속제품 등의 순서이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 주로 농림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표 V-10>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1	36(31.0)	83(10.0)	- 46
1982	69(90.0)	95(15.0)	- 25
1983	32(-54.0)	101(7.0)	- 69
1984	42(33.0)	145(43.0)	-102
1985	37(-11.0)	123(-15.0)	- 85
1986	76(102.0)	120(-2.0)	- 44
1987	129(70.0)	157(30.0)	- 27
1988	141(9.0)	211(35.0)	- 69
1989	153(9.0)	319(51.0)	-165
1990	129(-16.0)	451(41.0)	-322
1991	120(-7.0)	500(11.0)	-380
1992	112(-6.0)	488(-3.0)	-375
1993	124(10.0)	570(17.0)	-446
1994	157(26.0)	662(16.0)	-505
1995	201(28.0)	817(23.0)	-615
1996	233(16.0)	816(-)	-583
1997	241(3.0)	749(-8.0)	-508
1998	208(-13.0)	504(-33.0)	-295
1999	277(33.0)	592(17.0)	-314
2000	286(3.0)	701(18.0)	-415
2001	55(-7.0)	419(-)	-264

주 : 1. ( ) 안은 동기 증가율임.
2.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표 Ⅴ-11>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명	2000년	2001년
전자 및 전기	48	26
화학공업제품	45	25
철강·금속제품	42	23
비금속광물제품	13	23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66	22
일차산품	27	12
섬유류	21	1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8	11
생활용품	5	2
잡제품	1	1
총 계	286	156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표 Ⅴ-12>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입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명	2000년	2001년
농림수산품	416.9	258.1
화학공업 생산품	163.9	114.5
철강·금속제품	110.2	40.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4.3	3.5
기타제품	1.9	1.3
전자 및 전기	2.4	1.0
광산물	1.9	0.9
섬유류	0.4	0.2
총 계	701.8	419.7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2) 최적관세 및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

1999년 기준으로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HS 01~24) 중 그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은 다음의 <표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 6단위 기준으로 38개 품목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농수산물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뉴질랜드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적관세 조정과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도 바로 농수산물 분야이기 때문이다.

1999년 기준으로 뉴질랜드로부터 1,000달러 이상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모두 38개(HS 6단위 기준)였다. 뉴질랜드 수출 품목 중에서 냉동 소고기(HS 020220)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4.5%)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체 수출량 중 수생무척추동물의 액스와 즙(HS 160300)의 48.9%, 뱀장어(HS 030192)의 47.4%, 냉동 상어(HS 030375)의 45.3%, 뿔 등의 가루(HS 050790)의 40.6%를 각각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어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냉동한 어류의 간장(HS 030380) 21.3%, 신선 치즈(HS 040610) 23.8%, 코코아 조세식료품(HS 180690) 24.1% 등으로 수출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품목의 수출 비중은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 중에서 키위(HS 081050)의 85.8%를 뉴질랜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냉동 면양(HS 020441)의 81.5%로 이들 두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 그 밖의 버터(HS 040510)의 66%, 밀크와 크림(HS 040130, HS 040210, HS 040221)의 경우 약 20%를 조금 넘는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표 Ⅴ-13>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

(단위 : 천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뉴질랜드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뉴질랜드	비중
010119	기타 말(종마 제외)	39,895	1,024	2.6	2,307	1,024	44.4
020220	뼈째 절단한 쇠고기(냉동한 것)	13,836	7,544	54.5	225,516	7,544	3.3
020230	뼈없는 쇠고기(냉동한 것)	596,504	9,188	1.5	220,894	9,188	4.2
020441	기타 면양의 도체, 이분도체(냉동한 것으로 어린 면양 제외)	17,872	3,165	17.7	3,883	3,165	81.5
020442	뼈째 절단한 기타 면양고기(냉동한 것)	426357	223	0.1	2,180	223	10.2
020629	소의 기타 식용설육(냉동한 것)	20,718	2,026	9.8	49,389	2,026	4.1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활어)	1,701	807	47.4	24,585	807	3.3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 신선, 냉장한 것)	35,326	751	2.1	43,160	751	1.7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한 것 ; 간장과 어란 제외)	636	288	45.3	3,193	288	9.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67,526	5,752	8.5	358,097	5,752	1.6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한 것)	5,504	1,171	21.3	145,047	1,171	0.8
030420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	273,634	803	0.3	46,911	803	1.7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37,327	1,493	4.0	31,507	1,493	4.7
040130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중량의 6%를 초과하는 것 ; 농축과 가당하지 않은 것)	18,652	1,262	6.8	6,277	1,262	20.1
040210	밀크, 크림(지방분 함량이 전중량의 1.5% 이하)	256,379	1,008	0.4	4,247	1,008	23.7
040221	밀크, 크림(무가당, 지방분 함량이 1.5% 초과)	466718	163	0.0	728	163	22.4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 설탕 또는 감미료의 첨가여부 불문)	256,379	812	0.3	21,865	812	3.7
04049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 함유물품	66,104	634	1.0	25,686	634	2.5
040510	버터	260,306	1,211	0.5	1,836	1,211	66.0

<표 Ⅴ-13>의 계속

(단위 : 천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뉴질랜드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뉴질랜드	비중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 포함)와 커드	54,714	13,018	23.8	34,745	13,018	37.5
040630	가공치즈(분상치즈 제외)	38055	291	0.8	6,045	291	4.8
040690	기타 치즈	439053	303	0.1	12,929	303	2.3
050400	동물(어류 제외)의 장, 방광, 위(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83,908	1,853	2.2	17,079	1,853	10.8
050790	귀갑, 고래수염, 사슴뿔, 발굽, 발톱, 부리, 그 분과 웨이스트	19,424	7,877	40.6	22,412	7,877	35.1
070310	양파, 쪽파(신선, 냉장한 것)	76,186	1,363	1.8	4,387	1,363	31.1
070990	기타 채소(신선, 냉장한 것)	53253	167	0.3	3,238	167	5.2
081050	키위	270,828	6,456	2.4	7,521	6,456	85.8
120991	파종용 채소종자	8,806	922	10.5	28,632	922	3.2
150200	소, 면양, 산양의 지방(조상의 것 또는 용출한 것)	52,290	847	1.6	37,020	847	2.3
160300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3,703	1,810	48.9	10,407	1,810	17.4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1,669	3,195	7.7	44,125	3,195	7.2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	12,501	707	5.7	6,341	707	11.1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 2킬로그램 초과,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	28,211	3,814	13.5	20,543	3,814	18.6
180690	코코아조제식료품(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 액상, 분상, 입상)	4,249	1,024	24.1	13,335	1,024	7.7
200980	기타 단일의 과실이나 채소의 주스	7,004	377	5.4	4,653	377	8.1
210390	기타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39,159	1,221	3.1	42,243	1,221	2.9
210410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7363	259	3.5	3,516	259	7.4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92,515	5,130	5.5	126,372	5,130	4.1

자료 : KOTIS, UNCTAD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뉴질랜드가 전세계에 수출하는 금액과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그 차액을 살펴보자. 그 결과는 <표 V-14>에 정리되어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림 Ⅲ-3]과 연관하여 언급한 3가지 가정들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즉, (+)값이 클수록 앞의 제Ⅲ장에서 언급한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그 중간은 가정[3]에 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뉴질랜드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의 경우 뉴질랜드의 전체 수출액이 6,753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3.6억달러의 약 19% 수준이기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뉴질랜드의 수출전량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품목은 가정[1]에 속하여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기타 다른 국가들(rest of the world)로부터 계속해서 기타 냉동어류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에서 상위에 위치한 품목일수록 관세유예기간 설정보다는 최적 관세를 낮추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세 인하 폭은 이러한 품목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얼마 만큼 수입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이 우리나라 수입액에 비해 큰 분야는 쇠고기, 키위, 밀크와 크림, 치즈, 버터 등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한 뉴질랜드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는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우선적으로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표 Ⅴ-14> 뉴질랜드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농수산물 규모

(단위 : 천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뉴질랜드 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67,526	358,097	290,571
020220	뼈째 절단한 쇠고기(냉동한 것)	13,836	225,516	211,680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 (냉동한 것)	5,504	145,047	139,543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92,515	126,372	33,857
020629	소의 기타 식용설육(냉동한 것)	20,718	49,389	28,671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 활어)	1,701	24,585	22,884
120991	파종용 채소종자	8,806	28,632	19,826
180690	코코아 조제식료품(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 액상, 분상, 입상)	4,249	13,335	9,086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 신선, 냉장한 것)	35,326	43,160	7,834
160300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엑기스와 즙	3,703	10,407	6,704
210390	기타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39,159	42,243	3,084
050790	귀갑, 고래수염, 사슴뿔, 발굽, 발톱, 부리, 그 분과 웨이스트	19,424	22,412	2,988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한 것 ; 간장과 어란 제외)	636	3,193	2,557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1,669	44,125	2,456
200980	기타 단일의 과실이나 채소의 주스	7,004	4,653	-2,351
210410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7363	3,516	-3,847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37,327	31,507	-5,820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	12,501	6,341	-6,160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 2킬로그램 초과,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	28,211	20,543	-7,668

<표 Ⅴ-14>의 계속

(단위 : 천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뉴질랜드 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040130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중량의 6%를 초과하는 것 ; 농축과 가당하지 않은 것)	18,652	6,277	-12,375
020441	기타 면양의 도체, 이분도체(냉동한 것으로 어린 면양 제외)	17,872	3,883	-13,989
150200	소, 면양, 산양의 지방(조상의 것 또는 용출한 것)	52,290	37,020	-15,270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 포함)와 커드	54,714	34,745	-19,969
040630	가공치즈(분상치즈 제외)	38055	6,045	-32,010
010119	기타 말(종마 제외)	39,895	2,307	-37,588
04049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 함유물품	66,104	25,686	-40,418
070990	기타 채소(신선, 냉장한 것)	53253	3,238	-50,015
050400	동물(어류 제외)의 장, 방광, 위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83,908	17,079	-66,829
070310	양파, 쪽파(신선, 냉장한 것)	76,186	4,387	-71,799
030420	어류의 피레트(냉동한 것)	273,634	46,911	-226,723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 설탕 또는 감미료의 첨가 여부 불문)	256,379	21,865	-234,514
040210	밀크, 크림(지방분 함량이 전중량의 1.5% 이하)	256,379	4,247	-252,132
040510	버터	260,306	1,836	-258,470
081050	키위	270,828	7,521	-263,307
020230	뼈없는 쇠고기(냉동한 것)	596,504	220,894	-375,610
020442	뼈째 절단한 기타 면양고기(냉동한 것)	426357	2,180	-424,177
040690	기타 치즈	439053	12,929	-426,124
040221	밀크, 크림(무가당, 지방분 함량이 1.5% 초과)	466718	728	-465,990

자료 : KOTIS, UNCTAD

<표 V-15>는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만을 정리하였다. HS 6단위 기준으로 총 24개 품목이 이에 속해 있다.

우선적으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품목으로는 밀크와 크림(HS 040221, HS 050210, HS 040130)이 있다. 밀크와 크림의 뉴질랜드 수입단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는 않았지만 현재 실적관세가 각각 91.7%, 150.7%, 40%로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세가 일시에 무세화될 때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증가하여 가정[2]의 상태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입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파급효과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정[2] 혹은 가정[3]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뼈째 절단한 쇠고기의 수출은 미미하나 냉동 뼈 없는 쇠고기(HS 020230) 수출은 크다. 냉동 쇠고기의 우리나라 수입내역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순서이다. 뉴질랜드로부터의 냉동 쇠고기 수입은 1996년 196만달러에 이른 적도 있으며, 1998년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급감 하였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 품목에 대해 무세화할 경우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냉동 소고기는 WTO 관세협상에 의해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뉴질랜드의 냉동 쇠고기가 그 물량만큼은 최소한 수입될 것이므로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 관세수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냉동 쇠고기의 뉴질랜드의 수입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실적 관세도 41.8%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만

각국의 냉동 쇠고기의 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의해 수입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표 Ⅴ-15>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뉴질랜드)

(단위 : 천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차액 (천달러)	뉴질랜드 단 가	뉴질랜드 제외단가	실적 관세율
040221	밀크, 크림(무가당, 지방분 함량이 1.5% 초과)	-465,990	1.616	1.569	91.7
040690	기타 치즈	-426,124	2.313	2.540	37.8
020442	뼈째 절단한 기타 면양고기(냉동한 것)	-424,177	1.487	1.432	25.0
020230	뼈없는 쇠고기(냉동한 것)	-375,610	2.404	2.668	41.8
081050	키위	-263,307	1.758	1.499	47.5
040510	버터	-258,470	1.895	3.063	58.4
040210	밀크, 크림(지방분 함량이 전중량의 1.5% 이하)	-252,132	1.535	1.482	150.7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 설탕 또는 감미료의 첨가여부 불문)	-234,514	1.265	0.702	14.7
030420	어류의 피레트 (냉동한 것)	-226,723	3.193	3.023	12.8
070310	양파, 쪽파(신선, 냉장한 것)	-71,799	0.389	0.352	52.7
050400	동물(어류 제외)의 장, 방광, 위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66,829	3.251	1.393	30.0
070990	기타 채소(신선, 냉장한 것)	-50,015	0.510	0.683	28.5
04049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 함유물품	-40,418	6.776	1.577	40.0
010119	기타 말(종마 제외)	-37,588	15.510	12.217	7.9
040630	가공 치즈(분상치즈 제외)	-32,010	3.032	4.169	38.0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 포함)와 커드	-19,969	2.249	2.522	38.0
150200	소, 면양, 산양의 지방(조상의 것 또는 용출한 것)	-15,270	0.423	0.403	2.0

<표 Ⅴ-15>의 계속

(단위 : 천달러)

품목코드	품 목 명	차액(천달러)	뉴질랜드 단 가	뉴질랜드 제외단가	실적 관세율
020441	기타 면양의 도체, 이분도체(냉동한 것으로 어린 면양 제외)	-13,989	0.848	1.023	25.0
040130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중량의 6%를 초과하는 것 ; 농축과 가당하지 않은 것)	-12,375	1.348	1.186	40.0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 2킬로그램 초과,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	-7,668	2.141	2.181	8.0
170211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	-6,160	0.798	0.555	20.7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5,820	0.869	1.269	18.6
210410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3,847	2.144	1.704	24.7
200980	기타 단일의 과실이나 채소의 주스	-2,351	2.445	3.313	47.9

주 : 단가는 수입단가를 의미하며,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 KOTIS

냉동한 면양고기(HS 020442)는 뉴질랜드가 세계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양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25%의 실적관세를 무세화할 경우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는 양고기를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우리나라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키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키위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키위의 대뉴질랜드 수입의존도는 1999년에 85.8%로 가장 높다. 키위의 실적관세는 47.5%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를 무세화할 경우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키위를 전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비중은 유럽 59%로 유럽에 주로 하고 있으며, 일본 17%, 동아시아 8%, 북미 8% 순서로 나타난다. 이미 일본과 동아시아에 많은 양의 키위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가 시장 개방을 할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며, 역시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 시장가격하락에 의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증가하느냐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반응(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다.

다.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아직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간에 공식적으로 공동연구 등에 대해 논의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2000년 9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립을 제의하여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한국측 포럼 사무국으로 선정하여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본도 노무라연구소와 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을 주축으로 사무국이 선정되고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1) 교역현황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지난 20여년 간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약 20%를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Ⅴ-16> 우리나라의 對일본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1	3,444(13.0)	6,374(9.0)	- 2,930
1982	3,314(-4.0)	5,305(-17.0)	- 1,991
1983	3,358(1.0)	6,238(18.0)	- 2,881
1984	4,602(37.0)	7,640(22.0)	- 3,038
1985	4,543(-1.0)	7,560(-1.0)	- 3,017
1986	5,426(19.0)	10,869(44.0)	- 5,444
1987	8,437(55.0)	13,657(26.0)	- 5,220
1988	12,004(42.0)	15,929(17.0)	- 3,925
1989	13,457(12.0)	17,449(10.0)	- 3,992
1990	12,638(-6.0)	18,574(6.0)	- 5,936
1991	12,356(-2.0)	21,120(14.0)	- 8,764
1992	11,599(-6.0)	19,458(- 8.0)	- 7,858
1993	11,564(-)	20,016(3.0)	- 8,451
1994	13,523(17.0)	25,390(27.0)	-11,867
1995	17,049(26.0)	32,606(28.0)	-15,557
1996	15,767(-8.0)	31,449(-4.0)	-15,682
1997	14,771(-6.0)	27,907(-11.0)	-13,136
1998	12,238(-17.0)	16,840(-40.0)	- 4,603
1999	15,862(30.0)	24,141(43.0)	- 8,280
2000	20,466(29.0)	31,828(32.0)	-11,362
2001	10,376(-9.0)	15,652(-16.0)	- 5,276

주 : 1. ( ) 안은 동기 증가율임.
2.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1998년 수출감소와 함께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여 잠시나마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6년에는 157억달러에 이르기도 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분야는 1990년 이전에는 편직물 및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 완구류, 가죽제품 등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표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력 수출상품의 구성에서 전자 및 전기기기, 비금속 광물제품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수출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제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IC 칩과 관련된 수출이 많으며,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납사, 경유 및 등유, 편직제의류, 냉연 및 열연강판 등이 2000년 수출품목 중의 상위에 오른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 후반 이후 국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일본수출 시장을 잠식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화학제품은 그동안 꾸준한 투자 등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수출비중도 증가하면서 대일본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분야는 <표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및 전기기기,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가 주종을 이루며, 이 밖에 화학공업 생산품, 철강 금속제품 등으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상품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양국간 교역품목의 상호 보완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기제품, 기계류, 철강, 광학기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Ⅴ-17>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명	2000년	2001년
전자 및 전기	7,532	3,599
비금속광물제품	4,059	2,286
철강·금속제품	1,927	1,060
일차산품	1,952	91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279	679
섬유류	1,465	653
화학공업제품	972	53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655	341
생활용품	484	250
잡제품	140	65
총 계	29,466	10,376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표 Ⅴ-18>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입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명	2000년	2001년
전자 및 전기	11,877	5,542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8,785	4,013
화학공업 생산품	5,814	3,325
철강·금속제품	3,823	1,943
섬유류	510	276
기타제품	366	207
농림수산품	394	194
광산물	258	153
총 계	31,828	15,652

주 : 2001년은 7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KOTIS

2) 최적관세 및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공산품(HS 25 이상) 중에서 상위 200개[42]를 선정하고 일본이 수출하는 공산품 중 역시 상위 200개를 선정하여 공통적으로 겹치는 품목에 대해 <표 V-19>에 정리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은 미미하지만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잠재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품목까지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품목은 총 88개로 200개 중에서 44%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 공산품만을 선정한 것은 앞의 칠레와 뉴질랜드와는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역은 농산물보다는 대부분 공산품에 치중하고 있으며, 앞의 칠레와 뉴질랜드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산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듯이 양국이 겹치는 부분은 주로 HS 84류와 HS 85류가 대부분이다. HS 84류는 총 22개 품목으로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며, HS 85류는 총 21개 품목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다.

이는 앞서 전체적인 현황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입과 수출하는 품목이 비슷하며, 우리나라는 전기제품, 기계류, 광학제품 등이 전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20449)의 48.5%를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가장 수출 비

42) 우리나라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9천만달러 이상인 품목.

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20%를 넘는 품목으로는 석유 및 역청유(HS 2710000)[43], 파라-크실렌(HS 290243), 에폭시수지(HS 390730), 실리콘수지(HS 391000), 평판압연제품(HS 720839), 반도체관련부품(HS 854190), 편광재료제의 판(HS 900120) 등 7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 미만이다.

<표 Ⅴ-19>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공산품

(단위 : 백만달러, %)

품목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271000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 이들의 조제품(석유, 역청유 70% 이상 포함)	842	181.4	21.5	2,733	181.4	6.6
290243	파라 -크실렌	588	173.1	29.4	243	173.1	71.2
290250	스티렌	418	49.8	11.9	115	49.8	43.3
293390	기타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528	27.3	5.2	150	27.3	18.2
294190	기타 항생물질	450	35.3	7.8	129	35.3	27.4
300490	기타 의약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782	9.8	1.3	156	9.8	6.3
370790	사진용의 기타 화학조제품 및 단일물품	1,303	174.3	13.4	203	174.3	85.9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우프처리된 화학원소와 화학화합물	1,277	200.1	15.7	350	200.1	57.2
382490	기타(조제접결제, 화학공업-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잔재물)	1,218	228.8	18.8	521	228.8	43.9
390730	에폭시수지	456	101.5	22.3	136	101.5	74.6
390740	폴리카아보네이트	509	40.2	7.9	133	40.2	30.2
391000	실리콘수지(1차제품의 것에 한함)	373	76.3	20.4	155	76.3	49.2

43) 일본의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85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 Ⅴ-19>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3919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376	48.5	12.9	92	48.5	52.7
39219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391	47.9	12.2	101	47.9	47.5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49	39.5	6.1	113	39.5	35.0
701120	음극선관용의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 외피 및 이들의 부분품	849	62.5	7.4	122	62.5	51.2
710813	기타 반제품 형상의 금	547	11.5	2.1	197	11.5	5.8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20	204.0	48.5	611	204.0	33.4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697	180.8	25.9	355	180.8	50.9
732690	철강제의 기타제품	379	21.5	5.7	201	21.5	10.7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456	68.2	14.9	722	68.2	9.4
840734	차량추진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2,637	0.0	0.0	153	0.0	0.0
840890	압축점화식의 기타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엔진)	736	35.5	4.8	111	35.5	32.0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3,167	43.0	1.4	128	43.0	33.6
840999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836	53.0	6.3	239	53.0	22.2
841330	연료, 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내연기관용의 것)	490	43.7	8.9	154	43.7	28.4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391	9.6	2.5	118	9.6	8.2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1,583	8.1	0.5	127	8.1	6.4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 기타 후드	399	22.3	5.6	97	22.3	23.0

<표 Ⅴ-19>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504	59.0	11.7	167	59.0	35.3
841989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 기기	698	32.1	4.6	102	32.1	31.5
845691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588	76.8	13.1	280	76.8	27.4
846693	머시닝 센터, 선반, 밀링반, 보오링반, 나사절삭기, 연삭기 등의 부분품	426	42.9	10.1	106	42.9	40.5
847130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2,232	39.6	1.8	97	39.6	40.8
847150	디지털형 처리장치(제8471.41호 및 제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507	5.8	1.2	381	5.8	1.5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5,913	147.2	2.5	511	147.2	28.8
847170	기억장치	5,197	172.6	3.3	1,031	172.6	16.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1,234	139.5	1.2	1,800	139.5	7.7
847989	기타 금속처리용의 기기	5,823	801.6	13.8	1,547	801.6	51.8
847990	부분품기기의 부분품	1,101	139.9	12.7	285	139.9	49.1
848180	기타의 기기	960	131.3	13.7	404	131.3	32.5
848210	보올 베어링	1,165	75.9	6.5	142	75.9	53.5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	939	47.9	5.1	123	47.9	38.9

<표 Ⅴ-19>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850110	전동기(출력 37.5W 이하)	610	49.8	8.2	333	49.8	15.0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787	45.2	5.7	104	45.2	43.4
850440	정지형 변환기	867	45.8	5.3	202	45.8	22.7
850450	기타의 유도자	633	61.7	9.7	138	61.7	44.7
850490	변압기, 정지형 변화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433	69.9	16.1	135	69.9	51.8
850780	기타의 축전지	2,589	434.5	16.8	513	434.5	84.7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483	23.5	4.9	617	23.5	3.8
851790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의 부분품	2,999	36.7	1.2	331	36.7	11.1
852290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1,659	239.8	14.5	407	239.8	58.9
852320	마그네틱 디스크(기록이 안된 것)	623	0.2	0.0	112	0.2	0.1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359	69.8	5.1	345	69.8	20.2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타부분품	2,823	486.7	17.2	888	486.7	54.8
853224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다층)	1,434	94.5	6.6	154	94.5	61.3
853400	인쇄회로	2,105	52.9	2.5	399	52.9	13.3
853650	개폐기(전압 1,000V 이하)	1,021	69.4	6.8	162	69.4	42.9
853690	전기회로의 기타 접속용 기기(전압 1,000V 이하)	1,967	187.4	9.5	373	187.4	50.2
853710	전기의 배전, 제어용의 보우드, 패널 및 기타기반(전압 1000V 이하)	1,238	95.7	7.7	223	95.7	42.9

<표 Ⅴ-19>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853890	개폐기, 계전기, 퓨즈, 자동차단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의 부분품	1,685	119.1	7.1	227	119.1	52.5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천연색의 것)	403	61.4	15.2	293	61.4	20.9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1,280	226.6	17.7	369	226.6	61.4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제외)	897	155.1	17.3	320	155.1	48.5
854121	전력낭비율 1와트 미만의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775	114.4	14.8	567	114.4	20.2
854129	기타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855	45.5	5.3	94	45.5	48.4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	1,537	146.5	9.5	217	146.5	67.5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549	253.8	16.4	466	253.8	54.5
854190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선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부분품	432	120.6	27.9	141	120.6	85.5
854213	금속산화물 반도체(모스테크놀로지)	15,084	261.0	1.7	695	261.0	37.6
854219	기타(바이폴라와 모스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생성된 회로를 포함)	5335	1,733.8	32.5	12,507	1,733.8	13.9
854230	기타의 모노리디크집적회로	3,419	85.8	2.5	198	85.8	43.3
854290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부분품	2,187	178.0	8.1	221	178.0	80.6
854389	기타 (기타 기기)	2,606	58.7	2.3	262	58.7	22.4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571	10.9	0.4	129	10.9	8.4
870840	기어박스	4,621	299.2	6.5	459	299.2	65.2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049	80.2	2.0	182	80.2	44.1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1,644	0.2	0.0	566	0.2	0.0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5,750	21.6	0.4	118	21.6	18.3

<표 Ⅴ-19>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일본 수출			한국 수입		
		전체	한국	비중	전체	일본	비중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454	109.6	24.2	118	109.6	92.9
900190	프리즘, 반사경, 기타렌즈와 기타 광학용품 (장착하지 않은 것)	576	102.6	17.8	113	102.6	90.8
901042	스탭 앤 리피트 얼라이너	1,010	138.8	13.7	410	138.8	33.8
901380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의 광학기기	1,848	128.9	7.0	391	128.9	33.0
901890	의료용, 수의용의 기타 기기	765	47.0	6.1	142	47.0	33.1
903089	스펙트럼분석기	978	33.9	3.5	134	33.9	25.3
903090	오실로스코우프, 전압계, 전류계, 전항계, 누화계, 만곡율계 등의 부분품	481	29.1	6.0	107	29.1	27.2
903180	측정, 검사용의 기타 기기	1,021	84.1	8.2	260	84.1	32.3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타 기기	593	67.9	11.4	168	67.9	40.4

자료 : KOTIS, UNCTAD

우리나라의 품목별 일본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편광재료제의 판(HS 900120)의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92.9%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광학용품(HS 900190)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90.8%로 매우 높았다. 이 두 품목을 포함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절반(50%)을 넘는 품목은 모두 23개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00개 품목 중에서 11.5%가 일본으로부터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20>은 앞의 칠레와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일본의 전체 수출액과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리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88개 품목 중에서 5개 품목만이 차액이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기타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회로(HS 854219)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석유 및 역청유(HS 271000)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개 품목 가운데 83개 품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입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

<표 Ⅴ-20> 일본 수출 및 한국 수입 주요 공산품 규모

(단위 : 백만달러)

품목코드	품 목 명	일본수출(전체)	한국수입(전체)	차 액
854219	기타(바이폴라와 모스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생성된 회로를 포함)	5,335	12,507	7,172
271000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 이들의 조제품(석유, 역청유 70% 이상 포함)	842	2,733	1,891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456	722	266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20	611	191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483	617	134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천연색의 것)	403	293	-110
847150	디지털형 처리장치(제8471.41호 및 제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507	381	-126
732690	철강제의 기타제품	379	201	-178
854121	전력낭비율 1와트 미만의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775	567	-208
391000	실리콘수지(1차제품의 것에 한함)	373	155	-218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391	118	-273
850110	전동기(출력 37.5W 이하)	610	333	-277
3919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376	92	-284
39219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391	101	-290

<표 Ⅴ-20>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일본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854190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선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부분품	432	141	-291
850490	변압기, 정지형 변화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433	135	-298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 ; 기타 후드	399	97	-302
290250	스티렌	418	115	-303
845691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588	280	-308
390730	에폭시수지	456	136	-320
846693	머시닝 센터, 선반, 밀링반, 보오링반, 나사절삭기, 연삭기 등의 부분품	426	106	-320
294190	기타 항생물질	450	129	-321
841330	연료, 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 기관용의 것)	490	154	-336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454	118	-336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504	167	-337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697	355	-342
290243	파라 -크실렌	588	243	-345
710813	기타 반제품 형상의 금	547	197	-350
903090	오실로스코우프, 전압계, 전류계, 전항계, 누화계, 만곡율계 등의 부분품	481	107	-374
390740	폴리카아보네이트	509	133	-376
293390	기타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528	150	-378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타 기기	593	168	-425
900190	프리즘, 반사경, 기타렌즈와 기타 광학용품(장착하지 않은 것)	576	113	-463
850450	기타의 유도자	633	138	-495

<표 Ⅴ-20>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일본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852320	마그네틱 디스크(기록이 안된 것)	623	112	-511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49	113	-536
848180	기타의 기기	960	404	-556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제외)	897	320	-577
841989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 기기	698	102	-596
840999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836	239	-597
901042	스탭 앤 리피트 얼라이너	1,010	410	-600
901890	의료용, 수의용의 기타 기기	765	142	-623
840890	압축점화식의 기타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엔진)	736	111	-625
300490	기타 의약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782	156	-626
850440	정지형 변환기	867	202	-665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787	104	-683
382490	기타(조제접결제, 화학공업-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잔재물)	1,218	521	-697
701120	음극선관용의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 외피 및 이들의 부분품	849	122	-727
903180	측정, 검사용의 기타 기기	1,021	260	-761
854129	기타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855	94	-761
847990	부분품기기의 부분품	1,101	285	-816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	939	123	-816
903089	스펙트럼분석기	978	134	-844
853650	개폐기(전압 1,000V 이하)	1,021	162	-859

<표 Ⅴ-20>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일본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1,280	369	-911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우프처리된 화학원소와 화학화합물	1,277	350	-927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359	345	-1,014
853710	전기의 배전, 제어용의 보우드, 패널 및 기타 기반(전압 1000V 이하)	1,238	223	-1,015
848210	보올 베어링	1,165	142	-1,023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1,644	566	-1,078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549	466	-1,083
370790	사진용의 기타 화학조제품 및 단일물품	1,303	203	-1,100
852290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1,659	407	-1,252
853224	세라믹유 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다층)	1,434	154	-1,280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	1,537	217	-1,320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1,583	127	-1,456
901380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의 광학기기	1,848	391	-1,457
853890	개폐기, 계전기, 퓨즈, 자동차단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의 부분품	1,685	227	-1,458
853690	전기회로의 기타 접속용 기기(전압 1,000V 이하)	1,967	373	-1,594
853400	인쇄회로	2,105	399	-1,706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수상기의 기타부분품	2,823	888	-1,935
854290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부분품	2,187	221	-1,966
850780	기타의 축전지	2,589	513	-2,076
847130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2,232	97	-2,135

<표 Ⅴ-20>의 계속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코드	품 목 명	일본수출 (전체)	한국수입 (전체)	차 액
854389	기타(기타기기)	2,606	262	-2,344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571	129	-2,442
840734	차량추진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2,637	153	-2,484
851790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의 부분품	2,999	331	-2,668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3,167	128	-3,039
854230	기타의 모노리디크집적회로	3,419	198	-3,221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049	182	-3,867
870840	기어박스	4,621	459	-4,162
847170	기억장치	5,197	1,031	-4,166
847989	기타 금속처리용의 기기	5,823	1,547	-4,276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5,913	511	-5,402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5,750	118	-5,632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1,234	1,800	-9,434
854213	금속산화물 반도체(모스테크놀로지)	15,084	695	-14,389

자료 : KOTIS, UNCTAD

그러나 83개 품목 중에는 이미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44]에 의해,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이미

44) ITA는 우루과이 협상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 386개 품목에 대한 점진적인 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EC(15개국),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29개국이며, 이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체코 공화국, 인도, 이스라엘 등 11개국이 참가하여 총 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무세화되어 있는 품목이 금속산화물 반도체(HS 854213) 등 12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표 Ⅴ-21>기존 무세화 품목들

(단위 : 달러, %)

품목 코드	품 목 명	차액 (백만달러)	일본단가	일본제외 단가	실적 관세율
854213	금속산화물 반도체(모스테크놀로지)	-14,389	566.03	629.08	0.0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5,632	0.37	0.68	0.0
854230	기타의 모노리디크집적회로	-3,221	588.47	489.56	0.0
854290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부분품	-1,966	111.86	78.21	0.0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	-1,320	1,192.48	140.36	0.0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083	1,129.39	568.54	0.0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1,078	66.55	427.50	0.0
854129	기타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761	166.01	170.22	0.0
901042	스탭 앤 리피트 얼라이너	-600	379.16	617.83	0.0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제외)	-577	175.35	110.20	0.0
854190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선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부분품	-291	115.68	46.34	0.0
854121	전력낭비율 1와트 미만의 트랜지스터(감광성 제외)	-208	372.04	268.52	0.0

이들 국가가 정보기술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5%에 달한다. ITA에 의하면 1997년 7월 1일 이후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2000년 1월 1일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면서 2000년에는 원칙적으로 완전 무세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예조항으로 인하여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며 이후 2004년까지 HS 10단위 기준 386개 품목이 완전 무세화된다. 우리나라 이외에 유예조항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2005년까지는 전 품목이 무세화될 예정이다.

또한 ITA에 의해 1999년에는 무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에 무세화되는 품목도 24개 품목이 있어 이러한 품목들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도 하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품목 36개를 제외하고 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커서 우선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품목은 최종적으로 총 47개가 남았으며, <표 V-22>에 정리하였다.

이들 47개 품목의 실적관세율은 대개 7~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단가와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수입단가를 조사해 보면 47개 중 9개 품목에서만 일본의 수입단가가 낮았다. 이러한 9개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자동차용 부품(HS 870899)이 4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디젤엔진(HS 840890) 32%, 내연기관 부분품(HS 840999) 22.2%, 연료, 유활유용의 펌프(HS 841330) 28.4% 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피스톤식 엔진(HS 840734)의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은 반면 나머지 38개 품목은 모두 일본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있었다. 예를 들어, 기타 광학용품(HS 900190)은 일본으로부터의 단가가 278.56달러로 기타 미국,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단가는 112.37달러로 절반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90.8%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이 중간재로서 일본이 생산하는 중간재만이 우리나라의 완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앞서 언급한 농수산

물의 경우와는 자못 다르다고 생각된다. 농수산물에서는 특정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대개 농수산물 수출국이 세계적인 공급국이었고 현재 우리나라도 높은 실적관세로 그 분야를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농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분야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자원 재배분에 따른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간재에 치중해 있고 가격에 상관없이 품질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무세화를 통해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1980년 이후 근 20여년 간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의 자원 이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공업의 경쟁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1980년 경공업의 비중은 12.87%, 중공업은 9.84%에서 1998년 경공업 8.49%, 중공업 22.89%로 중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1980년 경공업 39.71%, 중공업 34.06%에서 1998년 경공업 16.72%, 중공업 66.22%로 역시 중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중공업으로의 자원이동과 함께 중공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 특히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는 경쟁력있는 중공업으로 하여금 더욱 생산 및 수출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높여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분석에 국한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

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 철폐를 통한 중간재 가격 하락과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또한 경제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적용한다면 그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Ⅴ-22>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일본)

(단위 : 달러, %)

품목 코드	품 목 명	차액 (백만달러)	일본단가	일본제외 단가	실적 관세율
870840	기어박스	-4,162	15.67	13.93	8.0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3,867	11.72	13.51	7.8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3,039	30.69	20.50	7.7
840734	차량추진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실린더 용량 1,000cc 초과)	-2,484	0.95	7.69	8.0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442	14.68	17.49	7.9
850780	기타의 축전지	-2,076	154.79	85.61	8.0
853890	개폐기, 계전기, 퓨즈, 자동차단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의 부분품	-1,458	80.54	46.79	7.9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1,456	8.20	5.25	8.0
370790	사진용의 기타 화학조제품 및 단일물품	-1,100	17.46	4.32	7.4
848210	보올 베어링	-1,023	19.79	18.35	12.6
853710	전기의 배전, 제어용의 보우드, 패널 및 기타 기반(전압 1,000V 이하)	-1,015	57.79	43.55	7.5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911	57.28	22.08	7.8
903089	스펙트럼분석기	-844	229.78	440.09	5.4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제외),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 포함)	-816	21.69	15.20	7.4

<표 Ⅴ-22>의 계속

(단위 : 달러, %)

품목 코드	품 목 명	차액 (백만달러)	일본단가	일본제외 단가	실적 관세율
903180	측정, 검사용의 기타 기기	-761	112.08	115.98	5.4
701120	음극선관용의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 외피 및 이들의 부분품	-727	2.17	1.40	7.9
382490	기타(조제접결제, 화학공업-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잔재물)	-697	5.39	0.76	8.0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683	24.21	9.45	7.5
300490	기타 의약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26	33.69	12.89	7.9
840890	압축점화식의 기타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엔진)	-625	9.99	13.68	5.9
840999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597	5.86	13.22	6.2
841989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 기기	-596	21.39	20.89	7.2
848180	기타의 기기	-556	24.97	17.78	7.6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536	40.58	7.49	7.8
900190	프리즘, 반사경, 기타렌즈와 기타 광학용품(장착하지 않은 것)	-463	278.56	112.37	7.9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타 기기	-425	97.75	96.03	7.5
293390	기타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378	27.01	16.67	6.6
390740	폴리카아보네이트	-376	2.35	1.92	8.0
710813	기타 반제품 형상의 금	-350	4,461.42	9,083.49	3.4
290243	파라 -크실렌	-345	0.34	0.35	5.0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342	0.25	0.21	5.0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337	23.82	10.40	6.3

<표 Ⅴ-22>의 계속

(단위 : 달러, %)

품목코드	품 목 명	차액 (백만달러)	일본단가	일본제외 단가	실적 관세율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336	142.20	214.47	8.0
841330	연료, 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 기관용의 것)	-336	16.90	39.33	7.9
294190	기타 항생물질	-321	171.35	176.80	7.2
390730	에폭시수지	-320	7.52	5.09	7.0
290250	스티렌	-303	0.46	0.46	8.0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 기타 후드	-302	23.09	18.40	7.4
39219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290	14.48	7.06	7.9
3919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284	25.15	8.65	8.0
850110	전동기(출력 37.5W 이하)	-277	81.42	24.28	7.7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273	14.72	36.14	7.8
391000	실리콘수지(1차제품의 것에 한함)	-218	3.91	3.37	8.0
732690	철강제의 기타제품	-178	3.02	7.40	7.3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천연색의 것)	-110	10.19	3.81	8.0

주 : 단가는 수입단가를 의미하며,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자료 : KOTIS

2. 최적 관세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체결국들에게 경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여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그만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수출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

러한 각 산업간의 변화는 각 산업에서 이용되던 생산요소들이 다시 재배분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정 상대국에 대한 관세는 무세화하지만 여전히 기타 다른 국가들과는 교역을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대외관세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째, 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그 상품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협정 상대국도 그 상품을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든지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아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자원의 재배분이 발생하고 이와 함께 최적 관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최대의 공급자라고 가정하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가 그 분야의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 상대국은 모든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다가 관세만큼을 더한 금액이 되어 상대국의 공급업자는 세계시장에 수출을 하는 경우보다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관세만큼의 이익을 더 보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늘릴 것이고 국내에서는 초과공급으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세계시장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협정 상대국이 이미 관세부

담없이 수출하고 있기에 협정 상대국 이외에는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가정[2]의 경우)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할 분야이다.

셋째,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수입의 일정부분을 협정 상대국이 차지하는 경우(가정[1]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협정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분야는 여전히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여전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최적의 대외관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어떠한 대외관세가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몇몇 논문에서 그 결과를 밝히고 있다. 그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대외관세를 내리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수출이 증가하여 그만큼 생산자들의 이윤이 증가할 경우 그동안 국내 생산자를 위해 부과되던 관세를 내림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수입이 증가할 경우 대외관세의 증가는 곧 국내시장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상승은 이미 최적인 관세에서 협정 상대국에게만 이윤을 증가시키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관세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인 결론과 함께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관세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관세 인하의 이유가 과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오직 WTO의 관세협상의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를 금방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곧 개최될 WTO 관세협상에서 생색을 내며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기에 이 두 효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NAFTA 등의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은 MFN 기준 단순평균 관세율은 1996년에 6.4%에서 현재는 4.6%로 감소하였고, 실적관세는 2.8% 수준이다. 여러 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도 가중평균 기준으로 1993년 7.8%에서 1997년 2.7%로 낮추어졌다. 캐나다도 1996년 전체 품목의 약 1/3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무세화 수준이 9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의 대외관세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멕시코는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1200여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일방적으로 MFN 관세를 철폐하였다. 멕시코가 WTO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외관세를 철폐한 것에는 그동안 멕시코가 집중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섬유 등은 미국이 할당을 정하여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멕시코에 대해서는 NAFTA 우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멕시코로서는 관세를 철폐할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캐나다는 1996년 관세가 2% 인하인 경우 관세를 0%로 낮추었다. 이는 WTO와 관계없이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대외관세 인하 동기와 함께 많은 부분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OECD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선진국들은 여전히 고관세를 부과하는 분야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무세화 수준이 90%에 이르지만 섬유, 의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

3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특혜협정으로 인하여 완전 자유화되었다. 농산물은 대부분 칠레 등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의해 수입되어 할당이 채워지기에 자유무역협정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대두되는 한 예이다. 한편,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국과 여타 다른 국가와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펴는 분야로는 제조업 수출 보조정책이 있다. 이러한 수출 보조 정책은 NAFTA 내에서는 철폐될 예정이지만 기타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는 계속 적용되고 있어 협정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역시 대외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호주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3년에 4.1%에서 2000년에 2.2%로 하락하였다. 뉴질랜드도 수입의 93%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이하게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의 관세율이 더 높다. 또한 할당량을 설정한 품목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작으며(호주 8개, 뉴질랜드 4개) 세율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으로 뉴 라운드에서 대외관세인하와 관련한 협상에 임해야 하며, 또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협정 상대국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외관세 정책도 변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세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을 정리하여 최적 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큰 분야)와 무엇보다도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분야(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칠레 혹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관세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대외관세와 대내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는 농수산물(HS 01~24) 중 수입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 중에서 HS 6단위 기준으로 35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38개 품목이었다.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대외관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는 칠레의 경우에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냉동한 어류의 내장(HS 030380), 기타 냉동어육(HS 030490), 기타 사료용 조제품(HS 230990), 사료용 식물(HS 121490) 등의 순서로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컸으며, 뉴질랜드에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뼈째 절단한 냉동 쇠고기(HS 020220),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90), 냉동한 소의 기타 식용설육(HS 020629), 뱀장어(HS 030192)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칠레 혹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의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도 하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품목 이외에도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품목이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품(HS 25 이상)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칠레와 뉴질랜드와는 달리 공산품의 교역이 양국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입 상위 200개와 일본 수출 상위 200개 품목 중 서로 중첩되는 동일한 품목이 88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모두 23개로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00개 품목 중에서 11.5%가 일본으로부터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정[1]에 속할 가능성이 큰 품목은 몇 개 없었다. 기타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회로(HS 854219), 석유 및 역청유(HS 271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HS 740311), 기타 철의 웨이스트(HS 720449), 기타 통신용기기(HS 851750) 등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들이 각각의 협정 상대국에 따라 대외관세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다. 대외관세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각 품목별로 적정 관세율로 미세한 조정(fine tuning)을 할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전까지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체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제1차 및 제2차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통하여 평균관세율을 8%로 인하하고 산업별로도 관세율 균등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만약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각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여 오던 균등관세율제도는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 쟁점은 약간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고민은 칠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칠레는 그동안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8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13개의 협정이 논의[45]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단일세율 정책과 과연 어떠한 조화 속에 이를 운영할지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균등관세율정책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45) <표 Ⅳ-7> 참고.

ITA로 인해 많은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되었고 무세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균등관세율정책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논쟁에 다시 한 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외관세율 조정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관세율 균등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산업별로 처한 입장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세율을 조정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연구과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균등화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유지할 경우의 장단점과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과 어떠한 조화에서 이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3. 관세 인하 일정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협정국에 적용되는 대내 관세(internal tariff) 유예기간 없이 협정 발효와 함께 무세화할 수 있는 분야는 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하지 못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협정 상대국이 그 상품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이미 그 상품에 대해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아 우리나라에 전혀 수출을 할 수 없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후 상대국에 대해 전면 수입개방을 하여도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러한 분야의 협상은 우리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한편,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이다. 앞의 절에서 언급한 두 번째 경우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우리

나라에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초과 공급상태가 발생하여 국내시장가격이 세계시장가격까지 하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가정[2]에 속하는 분야들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여러 형태의 관세유예기간이 등장하고 있다. 공통된 특징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자국에게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 등급을 나누어 다양한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인하 기간을 우선 보면, 3년에서 최장 18년까지의 기간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간은 각 품목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바뀌었으므로 이를 통해 산업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간 구조조정을 위해 각 산업별로의 자원 이동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 것이 관세유예기간을 두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일정은 무조건 최대한 늘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 20년의 관세인하 일정을 제시한다고 할 때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그만큼 늦어 질 것이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그만큼의 손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유예기간을 연구한 기존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또한 산업간 교역이 활발한 산업, 다른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많은 산업은 보다 짧은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멕시코의 경우에는 현재의 대외관세율과 관세유예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자국의 관세율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력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압력에 의해 멕시코가 협상에 단지 끌려갔을 수 있으며, 또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관세유예기간의 설정보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며, 자국의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임으로 인해 외국의 직접투자 등이 증가할 수 있는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칠레와 멕시코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에서도 보았듯이 사과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일한 기간에 걸쳐 양국에 적용되는 대내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칠레와 캐나다의 관세유예기간 설정에서도 무세화 제외 품목을 양국이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칠레가 MERCOSUR보다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더욱 관대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한 것도 칠레가 향후 NAFTA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욱 큰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접근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멕시코가 NAFTA로부터 얻는 이득에 의해 관세유예기간을 조정한 것과 같이 칠레도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제적인 교류가 있던 관계로 관세인하를 대부분 5년 이내에 이루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 대해 최장 10년 그리고 칠레에 대해서는 최장 7년 이내에 문호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캐나다와 MERCOSUR에 최장 18년 이후에 문호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MERCOSUR보다

더욱 관대하게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해당 분야의 대외관세 수준, 산업간 교역 규모, 다른 여타 국가와의 교역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이해득실, 앞으로의 자국에 미칠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각 국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캐나다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관세인하 방식에 따라 관세의 감축율을 제시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관세감축 폭(percentage points of tariff reduction)을 제시함으로써 상대국에게 여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관세인하 일정을 정함에 있어 기간이 다양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초기 관세수준을 얼마나 인하하며, 얼마 만큼의 인하율을 택할 것인지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관세인하를 미루다가 그 이후에 관세 인하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일정기간 관세인하를 미룰 경우 그만큼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 이후에 관세인하가 실시됨으로써 원활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당장 관세인하가 실시되기 어려운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간의 다양화와 함께 관세인하 방식에서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겠다.

칠레가 MERCOSUR와의 협정에서는 MERCOSUR 대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국별로 대상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서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물량을 한정하여 개방을 시도한 후에 점차 증량하는 것도 민감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NAFTA에서나 혹은 칠레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계절관세가 인용되었다. 4~5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이 기간에는 WTO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무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논의에서 포도가 민감한 품목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무조건 관세유예기간이 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경제적인 제약조건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인하 방식에서도 기간에 따른 다양화 이외에도 관세를 일정기간 유예한 이후에 관세를 점차 낮추거나, 물량을 한정하여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계절관세 혹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인하방식을 다양화함으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만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또한 캐나다와 같이 최소한의 관세감축 폭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협상 방안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세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을 정리하여 관세인하 일정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가정[2]에 속할 가능성이 큰 분야)를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칠레의 경우 포도(HS 080610), 포도주와 포도즙(HS 220421, HS 220429) 등 16개 품목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이 미미

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칠레가 포도, 사과, 배 등에서 세계적인 공급자 위치에 있지만,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기에 칠레보다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과일·특용·채소류 재배에 따른 수입이 쌀로 인한 수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일 수입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밀크와 크림(HS 040221, HS 040210, HS 040130), 치즈(HS 040690), 버터(HS 040510) 등 낙농제품, 냉동 양고기(HS 020442), 냉동 쇠고기(HS 020230), 키위(HS 081050) 등이 있었다. 그러나 냉동 쇠고기를 제외하고 여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들 제품에 대해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 탄력성에 따라 관세인하 일정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수입 상위 200개와 일본 수출 상위 200개 품목 중 서로 동일한 품목이 88개였으며, 이 가운데 ITA 등으로 이미 무관세가 혹은 무관세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최대 4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일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타 광학용품(HS 900190)은 일본으로부터의 단가가 278.56달러로 기타 미국,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단가는 112.37달러로 절반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90.8%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중간재로서 일본이 생산하는 중간재만이 우리나라의 완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의 설정은 앞서 언급한 칠레와 뉴질랜드의 농수산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공산품의 경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간재에 치중해 있고 가격에 상관없이 품질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무세화를 통해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Ⅵ. 요약 및 결론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체결국들에게 경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여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그만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수출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다시 말해 수출을 더 하게 되는 생산자에게는 자유무역협정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가격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 이러한 분야에 있는 생산자에게는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46].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득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그 집단 내에 있던 자원들도 다시 재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47].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새롭게 맞이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해 득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 맞는 대외관세 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장 큰 관심

46)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로서는 그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생산자들의 득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47) 국내적으로 발생한 모든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모든 이득을 손실을 입은 집단에게 주고 남을 경우 즉, 이득이 손실보다 클 경우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사항인 관세인하 일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에서 회원국들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무역정책 수단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우리나라도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세정책 특히, 대외관세(external tariff) 정책의 변화와 협정상대국에 대한 관세(internal tariff)유예기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대외관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이들 자유무역협정에서 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 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칠레, 뉴질랜드, 일본과의 교역품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관세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는 대외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 정책임을 언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생산자가 이윤을 더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관세를 인하하여도 생산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무임 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왜곡을 불러오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 관세로 돌아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는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수출입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각각의 자유무역협정과 그 협정 상대국, 그리고 품목별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라 대외 관세를 조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는 새로운 연구주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온 관세율 균등화정책에 대해 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산업별로 처한 입장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세율 균등화 정책을 평가하고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과 어떠한 조화에서 이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모든 재화에 대해 무세로 회원국간에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와 여건에 의해 특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한 순간에 무관세로 개방을 할 경우, 해당 분야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국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바뀌고 이로 인해 산업간 구조조정과 자원 재배치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관세유예기간을 두는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세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이 길수록 산업의 구조조정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관세인하 일정의 기간은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대외관세, 산업간 교역규

모, 여타 다른 국가와의 교역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협정자체가 주는 여타 이득, 협정상대국의 관세인하 일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유예기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간설정뿐만 아니라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인하 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관세인하를 미루다가 그 이후에 관세 인하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일정기간 관세인하를 미룰 경우 그만큼 그 산업의 초기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 이후에 관세인하가 실시됨으로써 원활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밖에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거나, 협정 상대국별로 수입할당량을 정하여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하여 물량조절을 통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계절관세 혹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인하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만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관세인하 폭을 제시하여 협상의 신축성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 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면서 다만 그 부정적인 효과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일정을 제시하거나 관세인하 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본 목적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한 예로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높은 관세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몇몇 산업에 대해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그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혹은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데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관세와 대내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우리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 조정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품목을 제시하였다. 칠레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HS 6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공산품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칠레 혹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관세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대외관세와 대내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는 농수산물(HS 01~24) 중 수입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 중에서 HS 6단위 기준으로 35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38개 품목이었다.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대외관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는 칠레의 경우에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냉동한 어류의 내장(HS 030380), 기타 냉동어육(HS 030490), 기타 사료용 조제품(HS 230990), 사료용 식물(HS 121490) 등의 순서로 가능성이 컸으며, 뉴질랜드에는 기타 냉동어류(HS 030379), 뼈째 절단한 냉동 쇠고기(HS 020220),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90), 냉동한 소의 기타 식용설육(HS 020629), 뱀장어(HS 030192) 등이 있었다. 대외관세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유예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칠레의 경우 포도

(HS 080610), 포도주와 포도즙(HS 220421, HS 220429) 등 16개 품목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이 미미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기에 칠레보다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가 여겨진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밀크와 크림(HS 040221, HS 040210, HS 040130), 치즈(HS 040690), 버터(HS 040510) 등 낙농제품, 냉동 양고기(HS 020442), 냉동 쇠고기(HS 020230), 키위(HS 081050) 등이 있었다. 그러나 냉동 쇠고기를 제외하고 여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들 제품에 대해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 탄력성에 따라 관세인하 일정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품(HS 25 이상)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칠레와 뉴질랜드와는 달리 공산품의 교역이 양국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입 상위 200개와 일본 수출 상위 200개 품목 중 서로 중첩되는 동일한 품목이 88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반(50%)이상인 품목은 모두 23개로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00개 품목 중에서 11.5%가 일본으로부터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대외관세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큰 품목은 몇 개 없었다. 기타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회로(HS 854219), 석유 및 역청유(HS 271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HS 740311), 기타 철의 웨이스트(HS 720449), 기타 통신용기기(HS 851750) 등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88개 품목 중 ITA 등으로 이미 무관세나 혹은 무관세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최대 47개 품목에 대

해 관세인하 일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또한 일본의 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의 설정은 앞서 언급한 칠레와 뉴질랜드의 농수산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공산품의 경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간재에 치중해 있고 가격에 상관없이 품질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의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하여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자전거 효과 혹은 도미노 효과를 언급한다. 처음에 한 번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뒤로는 손쉽게 자전거가 나아가듯이 처음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 후 여러 국가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도미노처럼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는 것을 하지 못해 자전거 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한 번 자전거가 가속을 받으면 순조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득을 보는 집단은 광범위하여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손실을 보는 집단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손실보다 이득이 크다고 하여도 손실을 보는 집단의 피해는 커 보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라는 경제적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겸, 『NAFTA의 출범과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 비교』, 정책연구 93-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8.

김원호 · 강문성 · 나수엽 · 김진오,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0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2.

김인철, 『국제무역경제학』, 박영사, 1992.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 주요시장 중장기 진출전(제4편: 미국)」, 무공자료 97-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12.

박종수, 『관세론 -이론과 법제-』, 전정증보판, 법문사, 1995.

서근태, 『국제경제론』, 제2판, 삼영사, 1996.

손병해, 「경제통합론 -이론과 실제-」, 『경제학 총서』, 제2판, 법문사, 1994.

송유철, 「한 · 칠레 FTA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정책세미나, 한 · 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분별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0.

어명근 · 이재옥 · 최윤국,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이명헌 · 정재호,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

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이종원・이학규・정중재・배기형,「국제지역경제」, 북봉출판사, 1996.

장근호,『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연구보고서 97-17, 한국조세연구원, 1997. 12.

장근호・이명헌,『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9-02,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정인교,『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정책연구 98-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_____,「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1988, pp. 3~22.

_____,「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0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2.

정재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재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

_____,「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소국과 대국의 경우」,『재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 7.

조선웅・박임구・최락일 역,『최신 국제경제학 -국제무역과 금융이론의 종합-(Dominick Salvatore 저)』, 제2판, 형설출판사, 1991.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http://www.kotis.net/

한국관세연구소,「관세율표」, 2001.

한국수출입은행,『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한국수출입은행, 1992. 6.

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www.dfat.gov.au/

Bagwell, Kyle and Robert Staiger, "An Economic Theory of GAT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1999, pp. 215~248.

Bagwell, kyle and Robert Staiger,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8, No. 2, May 1997.

Baldwin, Richard,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Jagdish Bhagwati, Pravin Krishna, and Arvind Panagariya(eds.), *Trading bloc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1999, pp. 479~502.

Baldwin, Richard, "Politically Realistic Objective Functions and Trade Policy," *Economic Letters,* 24, 1987, pp. 287~290.

Bhagwati, J.,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J. De Melo and A.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Carsten Kowalczyk and Donald Davis, "Tariff Phase-outs: Theory and Evidence from GATT and NAFTA," Working Paper, 5421, January 1996.

Gary Clyde Hufbauer and Jeffrey J. Schott, "NAFTA: An Assessment," Revised Edition, October 1993.

Grossman, Gene and Elhanan Helpman,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pp. 833~850.

_____, "Trade Wars and Trade Talk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1995(a), pp. 675~708.

_____, "The Politics of Free-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1995(b), pp. 667~690.

Kowalczyk, Carsten and Donald Davis, "Tariff Phase-outs: Theory and Evidence from GATT and NAFT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Cambridge, MA) Working Paper, No. 5421, 1996.

Krugman, P., "Is Bilateralism Bad?," E. Helpman and A. Razin (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Cambridge, MA: MIT Press, 1991, pp. 9~23.

Levy, P.I., "A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Free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No. 4, 1997, pp. 506~519.

McMillan, John, "Does Regional Integration Foster Open Trade? Economic Theory and GATTs Article XXIV," K. Anderson and R. Blackhurt(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3, pp. 292~310.

Maggi, Giovanni, "The Rol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1999, pp. 190~214.

OECD, *Review of Tariffs,* TD/TC(97)11, 1997.

OECD, *Review of Tariffs Synthesis Report,* TD/TC(99)7/FINAL, 1999.

Richardson, Martin, "Endogenous Protec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 1993, pp. 309~24.

_____, "Tariff Revenue Competition in a Free Trade Area," *European Economic Review,* 39, 1995, pp. 1429~37.

Serra, Jaime, et al., *Reflections on Regionalism,*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Staiger, Robert W., "International Rules and Institutions for Trade Policy," Grossman and K. Rogoff(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 New York: Elsevier Science Publishing, 1995, pp. 1495~1551.

UNCTAD, http://www.unctad.or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various years. http://www.ustr.gov/

Viner, Jacob, *The Customs Unions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1950.

WTO,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Canada 1996,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Canada 1998,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Canada 2000,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Mexico 1997,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United States 1996, http://www.wto.org/

WTO, Trade Policy Review-United States 1999, http://www.wto.org/

<국문요약>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정 재 호

소수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은 EC가 1957년 처음으로 GATT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여개의 협정이 GATT/WTO에 통보된 상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후한 1990년대에 무려 1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우리나라도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정책 특히, 대외 관세(external tariff)정책의 변화와 협정 상대국에 대한 대내 관세(internal tariff) 유예기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해 득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하에서 국가가 산업간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역정책 수단이다.

대외 관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는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임을 언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생산자가 이윤을 더 얻게 되므로 그만큼 생산자를 보호하던 대외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무임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 관세가 된다.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다양한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 인하 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일정기간 이후에 관세 인하 실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운영, 협정 상대국별로 수입 할당량 한정, 계절관세 혹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관세 적용 등 관세 인하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만큼의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관세 인하 폭을 제시하여 협상의 신축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 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면서 다만 그 부정적인 효과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일정을 제시하거나 관세 인하 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본 목적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관세와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우리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 조정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품목을 제시하였다. 칠레와 뉴질랜드는 농수산물(HS 01~24)을 중심으로(HS 6단위 기준) 칠레에서는 35개 품목, 뉴질랜드에서는 38개의 품목에 대해 대외 관세 조정과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공산품(HS 25 이상)에 대해(HS 6단위 기준) 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47개 품목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세한 대외

관세 조정이 필요한 품목보다는 일본에 대해 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품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달리 일본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 설정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인가를 결정할 경우 칠레 등과는 다른 정책적 잣대가 필요하다.

<Abstract>

Optimal External Tariffs and Tariff Phase-outs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Jaeho Cheung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Currently almost all countries who entered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are members of at least on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GATT accept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hrough Article XXIV. This article contains exceptions to its Most Favored Nation(MFN) principle. GATT rules permit for both a Costoms Union(CU), in which members set common external tariffs, and a Free Trade Agreement(FTA), in which members eliminate their internal barriers to trade and maintain separated external tariffs. In this paper, I focus primarily on the FTA. The reason I choose to study the FTA is that FTAs are dominant formation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notified to GATT and moreover Korea is trying to form FT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ile understanding that an FTA allows members to choose their own external tariffs, the ways in which FTAs affect new optimal external tariffs. This paper also focuses on internal tariff phase-outs under the FTAs, which are sensitive issues of the negotiations of the FTA.

Existing work has demonstrated that a small country not only removes internal tariffs against the partner, but also removes or reduces external tariffs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This paper finds the conditions on which goods would be lowered their tariffs, or which goods would be needed to set tariff phase-outs. Also, this paper demonstrates tariff phase-outs of various styles.

Understanding these new optimal external tariffs and other condi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 products(HS 6 digits) whose external tariffs could be lowered or whose internal tariffs need longer periods for tariff adjustment when Korea forms FTA with Chile, New Zealand, and Japan.

For example, if Korea establishes an FTA with Chile or New Zealand, Korea would reduce its external tariffs or set internal tariff phase-outs on 35 agricultural products (HS 6 digits) for Chile and 38 agricultural products for New Zealand, respectively. When Korea forms an FTA with Japan, Korea would need some periods for internal tariff adjustment of 47 manufactured goods. However, when Korea chooses Japan as the partner of an FTA, Korea might pick out shorter periods for internal tariff adjustment to encourage its export.

<著 者 略 歷>

鄭 在 皓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硏究院 專門硏究委員

政策報告書 01-03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2001年 12月 28日 印刷
2001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鄭在皓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硏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硏究院 2001
ISBN 89-8191-201-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

<표 Ⅳ-2> 미국·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미국관세율	캐나다관세율
1988	11.0	14.7
1989	9.9	13.2
1990	8.8	11.7
1991	7.7	10.2
1992	6.6	8.7
1993	5.5	7.2
1994	4.4	5.7
1995	3.3	4.2
1996	2.2	2.7
1997	1.1	1.2
1998	폐지	폐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992.

이와 같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규모를 증가시켰다. 캐나다를 기준으로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은 수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2000년 현재 캐나다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71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Ⅳ-3> 캐나다의 對미국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1	95,574	82,528	13,046
1992	103,860	87,224	16,636
1993	114,448	96,535	17,913
1994	133,112	109,591	23,521
1995	152,896	119,886	33,010
1996	164,761	126,088	38,673
1997	177,317	145,143	32,174
1998	182,802	149,054	33,748
1999	208,013	157,847	50,166
2000	240,645	169,068	71,577

자료 : KOTIS

NAFTA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HS(Harmonized System)의 분류법에 의해 8자리로 세분화된 상품들을 관세유예기간에 따라 A, B, C, C+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A는 즉시 철폐, B는 5년 유예기간을, C와 C+는 민감한 품목으로 각각 10년과 1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다[32].

32) A, B, C, C+ 등 4그룹으로 분류된 관세유예기간은 각 국의 수출상품 분류방법과 기존 관세율의 高低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품목별, 기간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은 관세인하 방법에 따라 A, B, BA, BP, B+, B8, By, C, CQ, CM, C8, C10, C12, C+, C15, N 등 16등급으로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와 유사하나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겸(1993) 참조.

<표 Ⅳ-4> NAFTA 관세유예기간

품목 구분	대상 품목 비중	관세유예기간
A	50%	협정 발효일부터 즉시 관세 철폐
B	15%	협정 발효일부터 5년간 동일비율로 인하하여 관세 철폐
C	35%	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동일비율로 인하하여 관세 철폐
C+		협정 발효일부터 15년간 동일비율로 인하하여 관세 철폐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7).

A 분류에 속한 품목은 NAFTA가 발효된 1994년 1월 1일부터 3국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군이다.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상품 중 약 5,900개 품목과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을 포함한 약 7,200여종의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A 분류에 속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공작기계, 의료장비와 일부 전자 및 통신장비, 화학제품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3국의 가중평균 기준으로 총 상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33].

B 분류에 속한 품목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의 관세유예기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1,200여 품목과 멕시코의 2,500여 품목이 이 분류에 속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항공장비, 경트럭, 컴퓨터와 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종이류 등이 있다. 따라서 199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공산품의 약 65%와 석유류를 제외하고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당부분이 무관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

33) 김상겸(1993) 참조

C 분류에 속한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따라서 2004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이루어진 교역 상품의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C+ 분류에 속한 품목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품목들로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다음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교역의 약 1%를 차지하는 품목들로서 유리제품, 고무화, 세라믹타일 등 저가의 공산품과 언제나 민감하게 등장하는 농산물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의 일부 과실류와 채소류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표 Ⅳ-5> 멕시코를 중심으로 본 NAFTA의 관세 인하 계획

분류	철폐시한	1991년 기준 3국의 무역 비중			
		멕시코의 수입		멕시코의 수출	
		對 미국	對 캐나다	對 미국	對 캐나다
A	발효즉시	84	79	43	41
B	5년	8	8	18	19
C	10년	7	12	38	38
C+	15년	1	1	1	2

주 : 1. 1991년의 교역량 기준 백분율임.
2. 원유의 무역량은 제외됨.

자료 : 김상겸(1993).

이 밖의 양국간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을 두고 있다. 한 예로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관련 관세인하 일정은 다음과 같다[34].

34) 관세인하 일정 이외에 자동차 부문의 수출입 물량을 규제하는 수출·입 비율 규정도 논의되었다. 이 협상에서 미국안(NAFTA 출범

<표 Ⅳ-6> NAFTA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일정

	멕 시 코		미 국	
승용차	출범 즉시	20%→10%로 인하	출범 즉시[1]	완전 자유화
	10년 간	단계적 자유화		
부품 및 소형트럭	5년 간	관세(10~13%)의 75% 인하	출범 즉시[2]	25%→10%로 인하
	추가 5년 간	단계적 자유화		
중대형 트럭 및 버스	10년 간	단계적 자유화	5년 간	단계적 자유화

주 : 1) 부품 포함
2) 소형트럭
자료 : 김원호 외(2000).

나. 칠레와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칠레의 경우를 예를 들어 그동안 칠레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관세 유예기간들을 설명해 보자.

칠레는 현재 8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후 0.5 : 1로 조정, 향후 10년 간 단계적으로 조정한 후 폐지)과 멕시코안(NAFTA 출범 직후 1 : 1로 조정, 향후 12년 간 유지 후 폐지)이 절충되어 NAFTA 출범 직후 0.8 : 1로 조정, 향후 10년 간 0.55 : 1로 단계적으로 조정한 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물량규제 이 외에도 원산지 규정, 연비산정기준 등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포함되었다. 김원호 외(2000) 참조.

<표 Ⅳ-7>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상황

기체결 국가	추진 중인 국가
멕시코(1992, 1997)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볼리비아(1993)	파나마
베네수엘라(1993)	쿠바
MERCOSUR(1996)	미국(NAFTA)
캐나다(1997)	FTAA
콜롬비아(1998)	EU(1996 기본협력협정)
에콰도르(1998)	EFTA
페루(1998)	한국
	일본(공동연구)

자료 : 외교통상부, 「칠레와의 FTA 추진현황」(2001.10)

이 가운데 칠레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일정에 대해 살펴보자. 칠레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1991년 9월 체결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대부분의 품목을 일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둘로 나누어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된 품목들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1996년에 무세화 된다.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자동차, 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특별 프로그램에 포함된 품목들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998년에 무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품목으로는 칠레는 목재 및 관련제품, 닭고기, 계란, 동물성 기름 등이 해당되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제품, 유리, 섬유, 도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일부 무관세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합의 일정에 의해 1998년에는 양국 교역은 완전 자유화가 된다.

<표 Ⅳ-8> 칠레-멕시코 간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일반프로그램	10	7.5	5	2.5	0	0	0
특별프로그램	10	10	8	6	4	2	0

자료 : 어명근 외(1999)

이러한 관세인하는 양국간에 교역규모를 크게 증가시켰다. 칠레의 수출은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멕시코는 1995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 정점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교역이 증가한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일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 양국간의 교역에서 무관세 품목의 비중이 수출에서 96.5%, 수입에서 99%에 이르게 되었다[35].

<표 Ⅳ-9> 칠레의 對멕시코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1	44	138	-94
1992	90	178	-88
1993	131	210	-79
1994	212	264	-52
1995	132	601	-469
1996	147	927	-780
1997	376	1076	-700
1998	505	710	-205
1999	624	580	44
2000	809	616	193

자료 : KOTIS

35) 어명근 외(1999) 참조.

칠레와 멕시코가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으로 정한 사과의 관세 인하 일정은 다음과 같다[36].

<표 Ⅳ-10> 칠레, 멕시코 원산지 사과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멕시코 사과의 관세인하 일정		칠레 사과의 관세인하 일정	
1999년	8.6	1999년	11.7
2000년	7.3	2000년	10.0
2001년	6.1	2001년	8.3
2002년	4.9	2002년	6.7
2003년	3.7	2003년	5.0
2004년	2.4	2004년	3.3
2005년	1.2	2005년	1.7
2006년 1월 1일	0.0	2006년 1월 1일	0.0

자료 : 어명근 외(1999)

한편, 예외품목으로는 칠레(59개 품목)의 경우 수산물, 유제품, 곡물, 설탕, 담배 및 궐련, 석유제품 등이 있고, 멕시코(46개 품목)는 보리, 밀가루, 식품성유지, 설탕, 담배, 석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특히, 분유, 신선 및 가공 치즈, 포도, 밀, 식물성 식용유 등은 양국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여 상호간에 민감한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로간의 협상을 쉽게 타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 포도의 경우 양국 모두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4월 15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선적된 포도에 대해서만 예외품목으로 인정하여

36) 양국은 사과 수입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여 할당량 내에 대해서만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WTO 규정에 따른 MFN 관세율(칠레의 경우 12%)를 부과한다. 칠레의 경우에는 예외품목 중에서 이미 무세로 교역을 하고 있는 품목도 일부 있었으며, 이들 예외품목의 세율은 대개 12% 수준이나, 일부 30%를 부과하는 품목도 있다. 특히, 야쟈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HS 1513)에 대해서는 50% 혹은 71%, 그리고 참깨기름과 그 분획물에 대해서도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 칠레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캐나다와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궁극적으로 칠레가 NAFTA에 가입하기 위한 전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칠레와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칠레가 그동안 다른 국가와 맺은 협정과 달리 노동과 환경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등 NAFTA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Ⅳ-11> 칠레의 對캐나다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1	53	157	-104
1992	63	162	-99
1993	61	203	-142
1994	70	265	-195
1995	96	315	-219
1996	140	408	-268
1997	131	433	-302
1998	191	353	-162
1999	174	411	-237
2000	227	512	-285

자료 : KOTIS

칠레와 캐나다의 교역규모는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초에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그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 칠레의 대캐나다 수출은 5천만달러, 수입은 1.6억달러였으나, 10년 후인 2000년에는 수출 2.3억달러, 수입 5.1억달러로 수출은 4.6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2배 증가하였다.

칠레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칠레는 캐나다에 대해 유예기간 기준으로 크게 10 그룹으로 단계를 나누어 최소 3년에서 18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37]. 품목은 HS 코드에 근거하여 A+, A*, AB, E, B-, B, B+, F, BC, C-, C, C*, C-15, C-16, C-18 등 15개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Y는 관세인하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A+, A*, AB, E 등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는 공산품과 천연가스가 주를 이루었으며, 농산물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무세화가 추진되었다.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캐나다가 칠레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80%에 해당한다.

3~4년 내 무세화하는 품목으로 A+, A* 혹은 AB에 속하는 커피 조제품, 타일류, 도자기류의 식탁용품, 유리제품, 철강, 양모, 종이류 등이 있으며, 5년 내 무세화 품목으로는 냉동콩, 과자류, 껌과 초콜릿, 페스타, 수프, 애완동물 식품 등 농산 가공식품, 면, 인조섬유(인조 필라멘트, 스테이플 섬유), 6년 내 무세화 품목으로는 원예작물, 곡물 분쇄물 및 조분, 쌀, 양파, 유리, 평판압연, 철강제 용기, 의자 등이 있다. 이외에 C 그룹에 속해 약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적용받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신선조란, 옥수수, 감자, 건조 채두류, 식용류 등이며,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

37)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1년, 16년, 17년, 18년 등이 있다.

한편 민감한 품목으로 16년에서 17년 내에 무세화하는 품목으로는 쇠고기(C-15)와 사탕수수(C-16)가 있다.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된 C-18은 2014년 이후에 무세화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 C-18로 구분된 품목으로 밀(HS 10019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HS 11010000)가 있다.

관세인하에서 제외되는 품목에는 살아 있는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등 HS 0105), 혹은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HS 0207), 버터, 유장, 치즈와 커드, 조란(HS 0401~0408), 소시지(HS 1601) 등이 있다.

<표 Ⅳ-12> 칠레의 對캐나다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7.0	3.5	0.0	-	-	-	-	-	-	-	-	-	-	-	-	-	-	-
A*	8.0	4.0	0.0	-	-	-	-	-	-	-	-	-	-	-	-	-	-	-
AB	8.0	8.0	4.0	0.0	-	-	-	-	-	-	-	-	-	-	-	-	-	-
E	5.5	5.0	4.0	3.0	0.0	-	-	-	-	-	-	-	-	-	-	-	-	-
B-	5.5	4.4	3.3	2.2	1.1	0.0	-	-	-	-	-	-	-	-	-	-	-	-
B	8.0	6.5	5.0	3.5	2.0	0.0	-	-	-	-	-	-	-	-	-	-	-	-
B+	8.0	8.0	6.0	4.0	2.0	0.0	-	-	-	-	-	-	-	-	-	-	-	-
F	10.0	9.0	7.0	5.0	4.0	2.0	0.0	-	-	-	-	-	-	-	-	-	-	-
BC	6.0	5.0	4.0	3.5	2.5	2.0	1.0	0.0	-	-	-	-	-	-	-	-	-	-
C	8.0	8.0	8.0	7.0	6.0	5.0	4.0	3.0	2.0	1.0	0.0	-	-	-	-	-	-	-
C-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	-	-	-	-	-	-
C*	11.0	11.0	11.0	11.0	10.0	10.0	8.0	6.0	4.0	2.0	0.0	-	-	-	-	-	-	-
C-15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0	8.0	6.0	4.0	2.0	0.0	-	-
C-16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0	8.0	4.0	2.0	0.0	-
C-18																		0.0

주 : C-18의 관세인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2003년까지 일정을 만들기로 합의함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캐나다 FTA: 칠레의 대캐나다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반면 캐나다는 칠레에 대해 유예기간 기준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 3년, 5년, 6년, 7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부분류는 17부문으로 A-, B-, B-*, Ba, B, BL, Bn(Bn1, Bn2, Bn3, Bn4, Bn4*, Bn5, Bn6, Bn7, Bn8), Bq(Bq1, Bq2)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또한 Y는 관세인하에서 제외된 품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유예기간에 의해 1999년 1월부터 무세화되는 품목이 있는 반면, 최장 2003년 1월부터 무세화가 되는 품목도 있다. 이는 칠레의 경우 2014년 1월에 무세화되는 품목에 비해 10년 이상 일찍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 후 2년차에 완전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A-에는 양모(HS 51) 등이 있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시행 후 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Ba는 주로 플라스틱류(HS 39)가 있으녀, 6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B에는 토마토, 양파, 오이, 과일류 등 야채와 과일이 그리고, 밀, 파스타 등의 농산물과 함께 메리야스편물 등 의류(HS 61~62)가 포함되어 있다. 면류(HS 52), 인조 필라멘트(HS 54, 인조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HS 55), 양탄자(HS 57), 특수직물(HS 58) 등 섬유류(HS 59, HS 63 등)의 대부분은 4년차에 관세를 무세화는 B-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가장 긴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Bn과 Bq 등은 신발류(HS 64)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인하에서 제외된 품목(Y)으로는 칠레와 마찬가지로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등 HS 0105), 혹은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HS 0207), 버터, 유장, 치즈와 커드, 조란(HS 0401~0408), 소시지(HS 1601) 등이 있다. 특히 칠레에 비해 소시지에 대해 더 세세한 분류를 통해 제외 품목을 명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칠레와 캐나다도 양국이 거의 동일한 품목을 관세인하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서로에게 민감한 품목을 양국에서 동시에 예외품목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만큼 협상

이 쉽게 타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캐나다의 관세인하 방식은 인하율을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마지막 연도에 100% 관세 인하로 무세화를 달성하거나,

<표 Ⅳ-13> B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 하 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3	28.6	42.9	57.1	71.4	85.7	100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캐나다 FTA: 캐나다의 대칠레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혹은 구체적인 관세율을 매 해마다 정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마지막 연도에 무세화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 Ⅳ-14> Bn1 그룹의 관세 인하 일정

(단위 : %)

초기연도 인 하 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P 인하[1)]	4%P 인하[1)]	8	6	4	2	0

주 : 1) 전년도 기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캐나다 FTA: 캐나다의 대칠레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에 반해 칠레는 구체적인 관세율을 매 해마다 명시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관세인하를 미루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